



유권자 정보 팜플렛



시 서기 HOLLY L. WOLCOTT 편집

★ 시 총선거 ★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선거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문의는 1-888-873-1000

Los Angeles시에서는 영어뿐 아니라 다음
언어로도 유권자 정보를 지원합니다.

Այս բրոշյուրի հայերեն օրինակն ստանալու համար
զանգահարեք 1-800-994-VOTE (8683) հեռախոսահամարով:

要索取本手冊的中文版・
請致電 1-800-994-VOTE (8683)

برای تهیه‌ی نسخه‌ای از این جزوه به زبان فارسی، با شماره تلفن
1-800-994-VOTE (8683) تماس بگیرید

हिन्दी में इस पैम्फलेट की प्रति प्राप्त करने के लिए,
1-800-994-VOTE (8683) पर फोन करें

このパンフレットの日本語版をご希望の方は、
1-800-994-VOTE (8683)までお電話ください。

ដើម្បីទទួលបានឯកសារចែកចម្លងមួយច្បាប់ពីកូនសៀវភៅនេះជាភាសាខ្មែរ
សូមហៅទូរស័ព្ទលេខ 1-800-994-VOTE (8683)

이 팸플릿을 한국어로 원하시면 다음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1-800-994-VOTE (8683)

Для получения копии данной брошюр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1-800-994-VOTE (8683).

Para obtener una copia de este folleto en español,
llame al 1-800-994-VOTE (8683)

Para makakuha ng kopya ng pamphlet na ito sa Tagalog,
tumawag sa 1-800-994-VOTE (8683)

เพื่อขอสำเนาจุลสารนี้ในภาษาไทย โปรดโทรศัพท์ติดต่อที่หมายเลข
1-800-994-VOTE (8683)

Muốn có một tập sách này bằng tiếng Việt, hãy gọi số
1-800-994-VOTE (8683)

목차

	페이지
투표 법안 요약.....	3-8
투표 법안, 논증 및 본문	
헌장수정안 제 DD호.....	9
헌장수정안 제 LL호	27
헌장수정안 제 HH호.....	44
헌장수정안 제 II호	53
헌장수정안 제 ER호.....	66
헌장수정안 제 FF호	76

유권자 정보

Los Angeles 카운티 등기 등록국/카운티 서기는 Los Angeles 시의 시 선거 관리자입니다.

본 팜플릿은 시의 2024년 11월 5일 시 총선거에 대한 투표 법안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투표소와 같은 선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LA 카운티에 (800) 815-2666번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웹사이트 www.lavote.gov를 방문하십시오.



다음 6페이지는 시 투표 법안의 간소화된 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정보를 비롯한 각 법안의 전문은 투표 요약 이후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목차 페이지 참조).



제목:

LOS ANGELES 시 독립 재구획 위원회.

쟁점:

10년마다 Los Angeles시 내에서 시의회 선거구 경계를 다시 그리는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시 헌장을 개정해야 합니까?

상황:

현재 시 헌장에 따르면 자문위원회가 10년마다 의회의 선거구 경계를 검토하여 시의회에 선거구 경계 변경을 권고해야 합니다. 의회와 시장이 최종 선거구 경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시는 선거구 경계에 대한 변경 사항을 고려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안 내용:

이 법안은 시 헌장을 변경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 의회나 시장의 개입 없이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인구 조사에 따라 시의회 선거구 경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헌장 및 기타 시 법률에 명시된 선거구 재구획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합니다.
- 선거구 재구획 과정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방식으로 이행합니다.
- 대중에게 선거구 재구획에 대해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합니다.
- 시 공직자에게 선거구 재구획 과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 시 법률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기타 구역 선거구 재구획 작업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16명의 위원과 4명의 교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독립 재구획 위원회의 위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됩니다.

시 법률에 설명된 바와 같이, 시 공직자, 직원, 장관, 로비스트 또는 시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운동에 기부한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찬성 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Los Angeles 시 내에서 시의회 선거구 경계를 10년마다 다시 그리기 위해 시에서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반대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Los Angeles 시 내에서 시의회 선거구 경계를 10년마다 다시 그리기 위해 시에서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 법안의 전문은 1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제목: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독립 재구획 위원회.

쟁점:

10년마다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내에서 교육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다시 그리는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시 헌장을 개정해야 합니까?

상황:

현재 시 헌장에 따르면 자문위원회가 10년마다 Los Angeles 통합교육구(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LAUSD)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선거구 경계를 검토하여 시의회에 선거구 경계 변경을 권고해야 합니다. 의회와 시장이 최종 선거구 경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시는 선거구 경계에 대한 변경 사항을 고려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안 내용:

이 법안은 시 헌장을 변경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 의회나 시장의 개입 없이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인구 조사에 따라 LAUSD 위원회 선거구 경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헌장 및 기타 시 법률에 명시된 선거구 재구획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합니다.
- 선거구 재구획 과정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방식으로 이행합니다.
- 대중에게 선거구 재구획에 대해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합니다.
- 시 공직자에게 선거구 재구획 과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 시 법률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기타 구역 선거구 재구획 작업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14명의 위원과 4명의 교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독립 재구획 위원회의 위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됩니다.

시 법률에 설명된 바와 같이, LAUSD 공직자, 직원, 장관, 로비스트 또는 LAUSD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운동에 기부한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찬성 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LAUSD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10년마다 다시 그리기 위해 시에서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반대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LAUSD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10년마다 다시 그리기 위해 시에서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 법안의 전문은 3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제목:

시 관리, 임명, 선거.

쟁점:

위원회 임명인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 공개를 제출하게 하고, 시 계약업체에 대한 관리자의 감사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시 감사의 소환권을 확대하고, 특정 총책임자 지위에 대한 임시 임명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 법안 발의 또는 주민투표 청원에 의해 제안된 법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시 관리, 임명, 선거에 대한 기타 변경 사항 및 설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 헌장을 개정해야 합니까?

상황:

시헌장은 시 정부의 구조, 책임, 기능, 절차, 권한을 확립합니다. 시는 시 관리, 임명, 선거와 관련하여 시 헌장에 대하여 다양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명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이 법안은 시 관리, 임명, 선거와 관련하여 시 헌장을 변경하고 명료화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이 포함됩니다.

- 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전에 위원회 임명인이 재산 공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 시 기금을 지출하거나 수령하는 시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자의 감사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 시 감사의 소환권을 확대합니다.
- 특정 총책임자 지위에 대한 임시 임명 권한을 부여합니다.
- 주민 법안 발의 또는 주민투표 청원에 의해 제안된 법률의 재정적 및 기타 영향력을 평가하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 향만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2명이 향만 지역에 거주하도록 요구합니다.

찬성 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시 관리, 임명, 선거와 관련하여 변경하고 명료화하기 위해 시 헌장을 개정하기를 원합니다.

반대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시 관리, 임명, 선거와 관련하여 변경하고 명료화하기 위해 시 헌장을 개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 법안의 전문은 4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제목:

시 행정 및 운영.

쟁점:

El Pueblo 사적과 동물원이 공원 소유지임을 명확하게 하고, 부가 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시 고용에 적용되는 차별 금지 규정에 성 정체성을 포함하고, 수수료, 규칙 및 규정을 정하도록 공향 위원회 위원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시 행정 및 운영에 대한 기타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 헌장을 개정해야 합니까?

상황:

시 헌장은 시 정부의 구조, 책임, 기능, 절차, 권한을 확립합니다. 시는 시 행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 헌장에 대하여 다양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명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이 법안은 시 행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 헌장을 변경하고 명료화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이 포함됩니다.

- El Pueblo 사적과 동물원이 공원 소유지임을 명확히 합니다.
- 부가 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과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 시 고용과 관련된 차별 금지 규정에 성 정체성을 포함시킵니다.
- 공향의 지상 수송에 관한 수수료, 규칙 및 규정을 정하도록 공향 위원회 위원의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 특정 시 문서에 전자 서명을 허용합니다.
- 시가 공원 내 부지를 Los Angeles 통합 교육구에 임대하여 공원 목적과 일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시 행정관"으로 변경합니다.

찬성 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시 행정 및 운영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시 헌장을 개정하기를 원합니다.

반대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시 행정 및 운영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시 헌장을 개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 법안의 전문은 5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제목:

시 윤리위원회 권한 및 운영 독립성.

쟁점:

시 윤리위원회의 최소 연간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 결정 및 고용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제한된 상황에서 위원회가 외부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원회 위원에게 추가 자격 요건을 부과하고, 시의회가 위원회 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도록 요구하고, 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시 헌장을 개정해야 합니까?

상황:

윤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자금, 정부 윤리 및 로비와 관련된 시와 주 법률을 관리합니다. 시의회는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독립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 헌장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안 내용:

이 법안은 시 헌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위원회의 최소 연간 예산을 수립합니다.
- 위원회가 지출 결정, 고용 및 인사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도록 허용합니다.
- 특정 조사 또는 집행 사안을 포함하여 제한된 상황에서 위원회가 자체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위원회 위원과 전무가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로부터 승인을 해줄 것을 구하는 기업의 소유권을 갖는 것, 주요 기부자로 기부하는 것, 선거운동에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위원회 위원과 전무에게 추가 자격 요건을 부과합니다.
- 시 선출직 공직자의 친척, 유급 선거운동 컨설턴트, 주요 선거운동 자금 기부자를 위원회에 임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시의회가 위원회 정책 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도록 요구합니다.
- 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최대 금액을 현재의 위반행위당 \$5,000에서 매년 조정하여 위반행위당 \$15,000로 인상합니다.

찬성 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독립성을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반대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독립성을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 법안의 전문은 7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제목:

LOS ANGELES 소방 및 경찰 연금, 보안관.

쟁점:

경찰, 공항, 항만,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에 고용된 보안관을 Los Angeles 시 직원은퇴 시스템(Los Angeles City Employees' Retirement System, LACERS)의 위원 자격과 서비스에서 Los Angeles 시 소방 및 경찰 연금 제도(Los Angeles Fire and Police Pension Plan, LAFPP)로 이전하고, 과거 이전에 대해 시가 특정 공항 및 경찰국 직원에 대한 환불을 포함한 관련 비용을 지출하도록 시 현장을 개정해야 합니까?

상황:

현장에는 시 경찰, 공항, 항만,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에 고용된 선서를 한 일부 보안관이 LACERS(LACERS 보안관)의 위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현장수정안은 자격을 갖춘 보안관 그룹이 LACERS에서 LAFPP의 6단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6단계는 LAFPP 위원을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제안 내용:

이 법안은 시 현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시의회에서 2025년 1월 12일자로 고용된 상태인 LACERS 보안관이 LACERS에서 LAFPP 6단계로 위원 자격, 근속 연수 및 퇴직 기여금을 이전하기로 일회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도록 승인합니다.
- 특정 LAFPP 6단계 위원에게 LACERS에 남아 있는 근속 연수와 퇴직 기여금을 LAFPP 6단계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이전에 LACERS에서 LAFPP 6단계로 이전한 특정 6단계 위원이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LAFPP에서 환불하도록 요구합니다.
- LAFPP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에 설명한 환불금을 포함하여 LACERS 보안관의 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찬성 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LACERS 보안관들이 자신의 위원 자격, 근속 연수 및 퇴직 기여금을 LACERS에서 LAFPP 6단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원합니다.

반대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LACERS 보안관들이 자신의 위원 자격, 근속 연수 및 퇴직 기여금을 LACERS에서 LAFPP 6단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 법안의 전문은 8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10년마다 Los Angeles시 내에서 시의회 선거구 경계선을 다시 그리는 독립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시 현장을 개정해야 합니까?

공정한 요약

SHARON M. TSO, 수석 입법 분석관 작성

Los Angeles 시(이하 시) 현장(이하 현장)은 연방 인구 조사에 따라 10년마다 시의회 선거구 경계를 정하고 조례에 의해 채택하는 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시의회 선거구 경계는 시의회 위원 선거, 해임, 시의회 공석 채우기에 사용됩니다. 현재 임명된 자문위원회는 재구획 과정 동안 그러한 경계를 변경하도록 시의회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시장이 최종 선거구 경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법안은 연방 인구 조사 이후 10년마다 시의회 선거구 경계를 채택할 권한,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 재구획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현장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연방 헌법, California 헌법 및 연방 투표권법을 준수하여 시의회 선거구 경계를 그려야 하며, 현장과 기타 시 법률에 명시된 재구획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의 개입 없이 시의회 선거구 경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최종 시의회 선거구 경계는 위원회에 의해서만 승인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재구획에 관해 대중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공청회와 청문회를 진행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 및 고려하고, 재구획 과정과 관련하여 시장,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시하고, 시 법률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기타 재구획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공청회 외에 재구획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이나 조직과 소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의 개입 없이 선정되며, 16명의 위원과 4명의 교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연방 인구 조사가 실시된 후 10년마다, 늦어도 숫자가 0으로 끝나는 각 해의 4월 1일까지는 설치됩니다. 위원회의 각 위원은 선출된 날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이 선출되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출 당시에 18세 이상이며 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지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최소 5년 동안 시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 협업 기술, 공적 참여 경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등록된 유권자 또는 미국 시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어떤 사람도 지원서 제출 전 최소 2년 동안 시 직원 또는 시 위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독립 재구획 위원회의 자격 요건에 관한 California 주 선거법 조항에 명시된 정치 및 로비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원회 위원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내역과 기타 재산 공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개인은 선출직 시 위원이나 시 선출직 공직자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이들을 위해 일하거나, 자원 봉사를 하거나, 선거운동 기여를 할 수 없으며, 다른 집행기구의 재구획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위원은 직무를 상당히 소홀히 하거나 직무상 기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해임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해임은 시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및 기타 시 부처에 대한 인구통계 및 지리적 데이터를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 데이터국을 설치합니다.
- 시 사무국이 위원회 지원 절차를 관리하고 윤리위원회가 감독을 담당합니다.

이 헌장수정안은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정적 영향 보고서 **MATTHEW W. SZABO, 시 행정관 작성**

이 법안은 10년마다 Los Angeles 시를 위해 16명으로 구성된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 보상은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은 금액으로 조례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시 사무국과 윤리위원회가 위원 선출을 지원하고, 시 사무국이 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 보상은 조례를 통해 정해지고, 시 부처 행정 비용은 행정 절차가 수립되면 시의 연간 예산 절차의 일부로 처리되지만, 실제 비용은 위원 업무량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부분적인 연간 비용이 2028~202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8~2029년에 시 일반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1,163,746로 추정됩니다. 2029~2030년 전체 연간 비용은 \$2,405,256로 추정됩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간에 누적되는 비용은 약 \$6,154,130로 예상됩니다.



현장수정안 제DD호에 대한 찬성론

100년 동안 Los Angeles 시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 구획 설정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지역과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선거구를 그리는 데 그 권력을 너무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시역사상 처음으로, 현장수정안 제DD호는 선출직 공무원으로부터 그 권한을 가져와서 시민을 위한 독립적인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를 창설할 것입니다.

2년 전 시는 몇몇 시의원이 선거구 재구획 과정에 개입해 커뮤니티 전체의 힘을 희석시키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현장수정안 제DD호는 이런 종류의 뒷거래를 막아낼 것입니다.

10년마다 새로운 위원회가 선정되어 의회 선거구를 다시 설정하게 됩니다. 지원자는 잠재적인 이해충돌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받게 될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나 그 직원 또는 가족은 안 됩니다. 후보자, 로비스트, 정치 컨설턴트도 금지됩니다. 위원의 절반은 심사를 거친 지원자 풀에서 추천과 같이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인종, 성별, 연령, 소득 및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도시의 다양성을 반영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일한 풀에서 나머지 인원을 선발합니다. 모든 과정은 시의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시 사무국이 관리합니다.

독립적인 위원들이 인구가 대략적으로 동일한 시의회 선거구를 그리고, 인종이나 민족 커뮤니티의 대표성을 희석하기 위해, 인종 또는 민족 커뮤니티를 자의적으로 여러 선거구에 분할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공평하게 추천된 선거구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민주주의와 효과적인 시 정부를 이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장수정안 제DD호는 시의원이 유권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시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선거구 재구획 절차에서 정치를 배제합니다.

현장수정안 제DD호 찬성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헌장수정안 제DD호에 대한 찬성론 서명자

PAUL KREKORIAN
제2 선거구 시의원
Los Angeles 시

NITHYA RAMAN
제4 선거구 시의원
Los Angeles 시

CALIFORNIA COMMON CAUSE

이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수정안 제DD호에 찬성하는 반박론

현장수정안 제DD호는 Los Angeles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독립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회 선거구 경계를 획정할 것입니다. 이는 시청을 완전히 개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제안은 정부 개혁 지지자, 학계 전문가 및 커뮤니티 대표들이 수개월에 걸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현장수정안 제DD호를 선거구 재구획 개혁의 '황금 표준'으로 일컫기도 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주장은 없습니다.

독립적인 시민 위원들이 시의 전 지역에서 공정하게 추천하고 Los Angeles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설계한 시의원 선거구는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 설계한 선거구보다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음성 녹음 스캔들로 밝혀진 뒷방 거래에 종지부를 찍으세요.

Los Angeles 시 정부의 공정한 대표성과 더 강력한 민주주의를 위해 현장수정안 제DD호에 찬성 투표하세요.

현장수정안 제DD호에 찬성하는 반박론에 서명하는 사람

PAUL KREKORIAN
제2 선거구 시의원
Los Angeles 시

NITHYA RAMAN
제4 선거구 시의원
Los Angeles 시

CALIFORNIA COMMON CAUSE

FERNANDO GUERRA, PH.D.
위원회 위원
L.A. 거버넌스 개혁 프로젝트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헌장 또는 기존 헌장 절에 추가되는 새 조항이나 문구는 밑줄로 표시되고, 헌장 또는 기존 헌장 절에서 삭제되는 단어는 취소선으로 표시됩니다.

헌장 수정안 DD호

1절. Los Angeles 시 헌장에 추가되는 섹션 480~490은 다음과 같습니다.

Los Angeles 시 독립 재구획 위원회

섹션 480. 위원회 설립 및 목적.

(a) Los Angeles 시에는 헌장 및 조례에 규정된 권한, 의무 및 책임을 갖는 독립 재구획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있습니다.

(b) 위원회의 목적은 시민의 참여와 절차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에 힘을 실어주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독립적인 재구획 절차를 통해 시의회 선거구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Los Angeles 시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섹션 481. 위원회 조직, 권한 및 의무.

(a) 위원회는 16명의 위원과 4명의 교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b) 10년마다 연방 인구 조사 후 새로운 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위원회 위원은 숫자 0으로 끝나는 각 해의 4월 1일까지 선출되어야 합니다.

(c) 위원회의 각 위원 임기는 해당 위원이 선출된 날부터 시작되며, 후임 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이 선출되는 시점에 만료됩니다.

(d)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1) 10년마다 실시되는 각 연방 인구 조사 후 Los Angeles 시의 시의회 선거구 경계 채택

(2) 헌장 및 조례에 명시된 선거구 재구획 기준과 절차 준수

(3) 선거구 재구획 과정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방식으로 이행

(4) 선거구 재구획에 대해 시민에게 교육하고 알리고, 선거구 재구획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요청하고 장려하며, 접근 가능한 공개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선거구 재구획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5) 선거구 재구획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 시의회 및 시 윤리위원회에 권고



섹션 482. 위원 자격 및 제한 사항.

(a) 각 위원회 위원은 선정 당시 만 18세 이상이고 시 거주자이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5년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원은 등록된 유권자 또는 미국 시민일 필요는 없습니다.

(b)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2년 동안 어느 때라도 시 공무원 또는 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지원하거나 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c)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독립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의 자격 요건에 관한 California 주 선거법 조항에 명시된 정치 및 로비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지원하거나 위원회에서 활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d) 위원회 지원자는 협업 기술, 시민적 참여 경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e)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위원회 위원은 선출직 시 공직자 또는 선출직 시 공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공직 후보를 위해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선거운동 기부금을 낼 수 없으며, 다른 정부 기관의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f) 위원회 위원 또는 전 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더 짧은 것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았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10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 선출직 공직 후보자가 되는 것.

(2) 위원으로 활동했던 위원회에서 채택한 선거구 경계를 사용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시의원 후보가 되는 것.

(g) 더 짧은 것을 기준으로, 위원회 위원 또는 전 위원은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4년 동안 또는 위원회에 선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시 위원회 임명을 수락하는 행위.

(2) 시의 선출직 공직자 또는 시의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유급 직원으로 고용되거나 컨설턴트로서 보수를 받는 행위.

(3) 시와 비경쟁 입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시의 등록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행위.

(5) 시의 공직 임명을 수락하는 행위.

(h) 위원회 대체 위원은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격 요건, 행동 기준 및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섹션 483. 위원 선정 및 해임.

(a) 예비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숫자 9로 끝나는 각해의 4월 1일까지 시작해야 합니다.

(b) 시 사무국이 위원회 신청 절차를 관리하고 시 윤리위원회가 감독을 담당합니다. 시 사무국 및 시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책임을 직원 또는 컨설턴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c) 시 사무국은 위원회 신청 절차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아웃리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며, 소외된 커뮤니티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과 조례에 명시된 대로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 사무국은 제출된 신청서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공개하며, 지원자 풀에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보유하고 시의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아웃리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d) 위원회에서 활동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해관계자는 시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 사무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섹션 482의 부속조항 (a)부터 (c)까지 명시된 객관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구성된 지원자 풀을 구축해야 합니다.

(e) 시 사무국은 공개 검토를 위해 지원자 풀에 개인의 이름을 게시하고, 시민이 지원자 풀에 있는 개인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 윤리위원회는 시민이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여 지원자 풀에서 특정 개인을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f) 공개 검토 기간 이후, 시 윤리위원회는 지원자 풀에 있는 개인의 신청서를 평가하여 섹션 482의 부속조항 (a)~(d)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파악하고 누가 위원회 선정 풀에 포함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 선정 풀이 구축된 후, 시 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위원회 선정 풀에 포함된 개인의 지속적인 자격 요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습니다.

(g) 시 사무국과 시 윤리위원회는 시 데이터국의 지원을 받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시에서 전반적으로 동등한 인구를 가지도록 8개 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 사무국은 공개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8개 지역에서 각각 1명을 선정합니다. 이 선정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8개 지역에서 각 1명씩 총 8명을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h) 선정된 8명의 위원은 위원회 선정 풀에 있는 나머지 모든 지원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8명의 위원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이러한 선정은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연령, 소득, 직업, 지리적 다양성 등 Los Angeles 시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관련 경험과 배경, 시 지역에 대한 친숙함,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초기 위원 8명 중 2/3의 투표로 공개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단,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식이나 비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i) 16명의 위원이 선정되면 위원회는 위원회 선정 풀에 있는 나머지 지원자 중에서 4명을 대체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대체 위원의 선정은 대체 위원 간의 지리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j) 위원회는 중대한 직무 태만, 중대한 직무상 위법 행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섹션 482에 명시된 위원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무단 결석 또는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위원에게 공청회를 고지하고 서면 및 공청회에서 답변할 기회를 제공한 후 위원회의 2/3가 찬성해야 합니다. 해임된 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시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 위원회는 중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섹션 207(c)에 설명된 공무원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형사 경범죄로 기소된 위원을 즉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해임은 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해임된 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시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l) 위원이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위원직은 공석이 됩니다.

(m)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 의장은 공개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체 위원 중 1인을 위원으로 선출합니다.

섹션 484. 재구획 기준.

(a) 위원회는 미국 헌법, California 주 헌법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을 준수하는 시의회 선거구 경계를 채택해야 합니다. 각 선거구는 연방 선거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편차가 필요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거구와 합리적으로 동일한 인구수를 가져야 합니다.

(b) 위원회는 부속조항 (a)의 요건을 따르는 것 외에 다음 우선순위와 기준에 따라 시의회 선거구 경계를 채택해야 합니다.

(1) 선거구는 가능한 한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합니다. 인접한 모서리 지점에서만 만나는 지역은 연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물로 분리되어 있고, 다리, 터널 또는 정기 페리 서비스로는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인접한 지역이 아닙니다.



(2) 이 부속조항의 이전 기준과 상충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최대 한도 내에서 지역 동네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지리적 무결성은 분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커뮤니티"란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표성을 위해 단일 선거구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구 집단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커뮤니티의 특성에는 교육, 공공 안전, 공공 보건, 환경, 주택, 교통, 사회 서비스 이용과 같은 공공 정책에 대한 공통 관심사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커뮤니티의 특성에는 또한 문화권, 공유된 사회경제적 특성, 유사한 유권자 등록률 및 참여율, 공유된 역사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커뮤니티에는 정당, 현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와의 관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실행 가능한 최대 한도 내에 있고 이 부속조항의 이전 기준과 상충하지 않는 경우, 선거구는 자연 및 인공 장벽, 거리 또는 시의 경계에 따라 경계가 결정됩니다. 선거구 경계는 주민들이 쉽게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실행 가능한 최대 한도 내에 있고 이 부속조항의 이전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 더 멀리 있는 인구를 위해 가까운 인구를 우회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리적 밀집도를 높여 선거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c) 위원회는 현직자, 정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유리하게 하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선거구 경계를 획정해서는 안 되며, 현직자 또는 후보자의 거주지는 선거구 경계 획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d) 위원회는 선거구 경계를 채택할 때 경제 및 문화적 랜드마크 및 자원에 대한 커뮤니티 및 문화적 연관성을 고려하는 등 기타 추가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 기준에 관한 모든 결정은 공개 회의에서 고려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추가 기준은 부속조항 (a)~(c)까지의 해당 요건을 준수하여 고려해야 하며 이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e) 위원회가 선거구 경계를 채택한 후, 위원회는 가능한 한 많은 주민에 대해 거주지 시의회 선거구 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시의회 선거구에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섹션 485. 공개 회의, 아웃리치 및 접근성

(a) 위원회는 랄프 엠 브라운법 및 기타 해당 공개 회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위원회는 소외된 커뮤니티와 비영어권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선거구 재구획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위원회는 선거구 재구획 절차의 각 단계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청회와 워크숍을 개최해야 합니다.

(d) 위원회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위원회 회의에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며,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연방법 및 주 법률에서 요구하는 언어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e) 위원회는 장애인과 노인이 위원회 회의 및 청문회에 접근하고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f) 증언 제공의 목적상, 선출된 시 공직자는 시민과 동일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g) 일방적인 의사교환.

(1) 위원회 위원은 공개 회의 외에는 선거구 재구획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다른 위원, 위원회 직원, 법률 고문 또는 위원회가 고용한 컨설턴트와의 의사소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 문제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되는 경우 시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2) 위원회의 전무, 위원회의 매핑 직원 또는 매핑 컨설턴트,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위원회 직원은 공개 회의 외에는 선거구 재구획 문제와 관련하여 선출직 시 공직자, 선출직 시 공직 후보자 또는 해당 공직자 또는 후보자의 직원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행정 문제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되는 경우 시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3) 시 윤리위원회 위원, 시 사무국 또는 위원회 위원 선출 절차에 관여하는 기타 시 부서의 위원이나 직원은 해당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개 회의 외부에서 선출직 시 공직자, 선출직 시 공직 후보자, 그 직원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선출 절차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행정 문제, 법률 자문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되는 경우의 의사소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4) 위원회는 해당 규칙이 브라운법을 준수하고 이 부속조항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공개 회의에서 채택된 경우, 의사소통에 관한 다른 규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섹션 486. 사무, 행정 및 인사에 관한 위원회의 강령.

(a) 위원회의 각 위원과 대체 위원은 California 주 정치개혁법에 따라 채택된 위원회 이해충돌 규범을 준수하여 지정된 직원이어야 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 윤리위원회에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및 기타 재정 공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위원회의 2/3가 승인해야 하는 다음 조치를 제외한 공식 조치에는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 표결이 필요합니다.

(1)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에 대한 투표

(2) 위원 해임 투표

(3) 섹션 483(h)에서 설명하는 위원 8명의 선정 투표

(4) 최고책임자, 지도제작 컨설턴트 또는 지도제작 직원, 위원회에서 핵심 직원으로 지정한 기타 직책의 채용을 위한 투표

(5) 주 및 시 법률에 따라 해당 권한이 위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 또는 계약 권한의 위임을 승인하는 투표

(c) 위원회의 대체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지만 투표할 수 없으며, 정족수 성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할 위원 1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다른 공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 초안 및 최종 재구획 계획에 대한 선거구 경계의 개발 원칙에 대한 고려는 공개 회의에서 진행되며, 위원회의 투표로 승인됩니다.

(f) 위원회는 위원회 청문회 또는 회의에서 고려하기 전에 제안된 지도 원칙 및 제안된 최종 지도를 위원회 웹사이트에 최소 7일 동안 게시해야 합니다.

(g) 위원회는 최고책임자 및 선거구 재구획, 기술 및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이 직책은 현장의 공무 수행 조항에서 면제됩니다.

(h) 위원회는 현장의 계약 조항과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경쟁 절차를 통해 컨설턴트를 고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i) 시 사무국은 위원회가 시 자원에 접근하고, 시 부서 및 직원과 협력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행정적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j) 위원회는 시 검사를 법률 고문으로 활용하거나 시 검사에게 위원회를 위한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487. 최종 재구획 계획의 채택.

(a) 위원회는 늦어도 숫자 1로 끝나는 각 해의 9월 30일까지 새로운 의회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는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을 채택해야 합니다.



(b) 위원회가 부속조항 (a)의 기한까지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시 검사는 즉시 상급 법원에 섹션 484에 설명된 재구획 기준에 따라 새로운 시의회 선거구 경계를 규정하는 명령을 청원해야 하며, 해당 경계는 위원회가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을 채택할 때까지 시 선거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c) 위원회는 최종 계획과 더불어, 섹션 484에 설명된 선거구 재구획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d)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이 채택되면 위원회는 계획, 최종 보고서 및 기타 첨부 자료를 시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 자료를 위원회의 선거구 재구획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e) 시 사무국은 위원회의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과 보고서를 시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시 사무국은 시 조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의회 선거구 경계에 대한 최종 계획과 설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f) 새로운 의회 선거구를 설정하는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은 헌장 조례 규정에 따라 공표된 날로부터 31일 후에 발효됩니다.

(g)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은 시 조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h) 선거구 재구획 설정으로 인한 선거구 경계 또는 위치 변경은 해당 위원이 선출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당 위원의 임기를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i) 위원회가 채택한 선거구 경계는 법적 소송을 해결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번 연방 10년 인구 총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j) 시에 합병되거나 시와 통합된 모든 지역은 위원회가 인접한 선거구로 추가됩니다. 이는 합병 또는 통합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섹션 488. 위원회 자금 조달.

(a) 시의회와 시장은 위원회 직원, 컨설턴트 및 법률 고문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선거구 재구획 절차에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서 위원회의 행동을 변호하는 등과 같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b) 시의회와 시장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지원, 위원회 기록 유지와 관련된 모든 시 부서에 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c) 위원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섹션 489. 위원회 권고.

(a)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 분석 및 데이터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시 헌장 및 행정법에 명시된 독립적인 선거구 재구획 절차의 변경을 시 윤리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b) 시 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고 선거구 재구획에 관한 시 헌장 및 행정법 개정 권고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권고안에 행정법의 개정이 포함된 정도에서, 윤리위원회는 시 감사의 도움을 받아 권고된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을 준비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c) 행정법 개정. 시의회는 선거구 재구획에 관한 행정법 개정을 권고하는 윤리위원회 보고서 및 그에 수반되는 조례안이 제출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안된 조례안을 변경 없이 승인하거나 비승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의회가 60일 이내에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제안된 조례안은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상정되며, 시의회에는 시장의 거부권을 재의결할 수 있도록 상정됩니다. 시장이 승인하거나 시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장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의회가 승인한 경우, 제안된 조례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d) 헌장 개정. 선거구 재구획에 관한 시 헌장 개정을 권고하는 윤리위원회 보고서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헌장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시기적절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시 헌장을 개정하려면 시 유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섹션 490. 시정보국.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및 기타 시 부서를 위한 인구통계 및 지리 데이터를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해 Los Angeles 시 내에 데이터국을 설치합니다. 이 섹션의 어떠한 조항도 데이터국이 시 부서 또는 사무실 내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2절.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04는 다음과 같이 폐지됩니다.

섹션 204. 시의회 의원 선거, 선거구 재구획.

(a) **조례에 따른 선거구 재구획.** 시의회는 10년마다 선거구 재구획 조례가 발효된 시점 이후로 소환을 포함한 모든 의원 선거 및 의원직의 결원 충원을 위해 사용할 선거구 선을 조례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선거구는 각각의 선거구 구획 설정 직전의 연방 인구 조사에 나타난 시 전체 인구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는 시의회 선거구 경계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됩니다. 위원회 의장이 2명을 임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원회에서 1명, 시장이 3명, 시 감사가 1명, 시 감사관이 1명의 위원을 임명합니다. 시 임원이나



직원은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는 예산 승인에 따라 이사 및 기타 직원을 임명하며, 이 직책은 현장의 공무 수행 조항에서 면제됩니다.

(c) **선거구 재구획 절차.**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는 인구 조사국이 10년마다 인구 조사 데이터를 발표하는 날짜 이전에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후 선거구 구획을 다시 설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할 새로운 위원회가 임명됩니다. 위원회는 임명 후 언제든지 선거구 재구획 절차를 시작하되, 늦어도 2021년 6월 1일과 그 이후 매 10주년이 되는 날짜까지 시작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선거구 재구획 절차 전반에 걸쳐 시민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조례로 정한 날짜까지 선거구 재구획 제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늦어도 2021년 12월 31일과 그 이후 매 10년이 되는 날짜까지 선거구 재구획 조례를 채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설정된 선거구에 선거구 구획 설정 직전의 연방 인구 조사 또는 시의회가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타 인구 보고서/추정치에 근거한 시 전체 인구의 거의 동일한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 이 절의 어떠한 조항도 시의회가 더 자주 선거구 구획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d) **선거구 재구획 기준.** 모든 선거구는 주 및 연방법의 요건을 준수하여 구획이 설정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지역과 커뮤니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연 경계 또는 도로선을 활용하고 지리적으로 간소해야 합니다.

(e) **선거구 재구획이 현직자에게 미치는 영향.** 선거구 재구획 설정으로 인한 선거구 경계 또는 위치 변경은 해당 위원이 선출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당 위원의 임기를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f) **합병 또는 통합.** 시에 합병되거나 통합되는 모든 지역은 해당 절차가 완료되기 전 또는 완료와 동시에 시의회가 조례에 따라 인접한 선거구에 추가하며, 이러한 추가는 현장의 다른 조항과 무관하게 합병 또는 통합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g) **임기.** ~~홀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섹션 205(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97년부터 매 4년이 되는 해에 시작되며, 짝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1999년부터 매 4년이 되는 해에 시작되어 2020년까지로 합니다. 2020년부터 짝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2020년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되며, 홀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2022년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됩니다.~~

섹션 3. Los Angeles 시 현장 섹션 205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섹션 205. 공직 임기.

(a) 시장, 시 검사, 시 감사관 및 시의회 의원은 부속조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4년의 임기로 그 직책을 수행합니다.



(b) 헌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새로운 선거일로 전환하기 위해 2015년에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2020년 12월에 만료되는 임기로 선출되며, 2017년에 선출된 시장, 시 검사, 시 감사관 및 시의회 의원은 2022년 12월에 만료되는 임기로 선출됩니다.

(c) 시 공직에 선출된 공직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부터 짝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의 공직 임기는 2020년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됩니다. 시장, 시 검사, 시 감사관 및 홀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2022년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됩니다. 시 공직에 선출된 공직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해 12월 두번째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d) 섹션 207에 따라 공직에 공석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출직 및 임명직의 현직자는 후임자가 자격을 갖추 때까지 그 직책을 유지합니다.

섹션 4. 독립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의 조치를 시의회 검토에서 면제하는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45의 부속조항 (d)에 다음과 같이 부속조항 (9)를 추가합니다:

(9) 독립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의 활동.

섹션 5.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52의 부속조항 (h)를 폐지하고, 부속조항 (i), (j) 및 (k)를 각각 (h), (i) 및 (j)로 번호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섹션 252. 조례, 명령 및 결의안 발효일.

명령과 결의안은 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이나 시장 거부권 행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례는 공포 후 31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섹션 253에 따라 채택된 긴급 조례를 제외하고 다음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a) 선거 명령 또는 그 외에 선거와 관련된 조례

(b) 연간 시 세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명령하거나 그 외에 이와 관련된 조례

(c) 도로, 대로, 골목길, 법원 또는 기타 공공 장소와 관련하여 명칭, 연석, 등급, 개선, 개통, 확장, 직선화 또는 연장을 규정하거나 변경하는 조례

(d) 하수도 또는 빗물 배수구 건설과 관련된 조례

(e) 부속조항 (c) 및 (d)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사유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 진행하거나, 지역 평가를 부과, 징수하는 조치와 관련된 조례

(f) 사유 재산에 대한 지역 평가에 따라 비용 지불을 규정하는 법률, 조례에 의거하여 공원, 대로 또는 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수용에 관한 조례

(g) 직급 신설, 급여 책정, 직원 채용 승인 또는 고용 조건 규정과 관련된 조례



(h) 시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학군을 설정하는 조례

(h)(h) 헌장 제11조에 따라 연금 또는 퇴직 급여를 규정하는 조례

(h)(i) 프랜차이즈, 권리 또는 특권을 부여하는 조례를 제외한 모든 계약을 체결하거나 승인하는 조례

(h)(j) Los Angeles 시 자체 또는 시 내 모든 지역의 채권을 판매 또는 발행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승인하는 조례

섹션 6.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72의 부속조항 (c)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c) **위원회.** 독점적 부서 위원회, 윤리위원회, 소방 및 경찰 연금 위원회, Los Angeles 시 공무원 퇴직 시스템 관리 위원회 및 상수도 및 전력 직원 퇴직 시스템 관리 위원회, 독립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는 헌장이 해당 위원회에 통제권을 부여하는 정책 및 기금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만 의뢰인으로서 결정을 내립니다.

섹션 7.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73의 부속조항 (a)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a) **위원회.** 독점적 부서 위원회, 윤리위원회, 소방 및 경찰 연금 위원회, Los Angeles 시 공무원 퇴직 시스템 관리 위원회 및 상수도 및 전력 직원 퇴직 시스템 관리 위원회, 독립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는 헌장이 해당 위원회에 통제권을 부여하는 정책 및 기금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합의만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타 모든 소송의 합의는 이 섹션의 부속조항 (b) 및 (c)에 따릅니다.

섹션 8. 시 사무국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81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부속조항 (h)를 추가합니다.

(h) 시 사무국은 헌장 및 조례에 규정된 대로 독립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섹션 9. 위원 해임에 관한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502의 부속조항 (d)는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d) 해임.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는 시 윤리위원회와 경찰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또는 위원회 위원은 시의회의 승인 없이 시장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된 위원은 해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2/3 찬성 표결 시 이의 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위원을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시의회가 해당 위원을 복귀시키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는 해임된 위원의 후임자 임명 승인과는 별개의 조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섹션 700에 따라 해임될 수 있습니다. 독립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의 위원은 섹션 483에 따라 해임될 수 있습니다.



섹션 10. 독립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가 시장과 시의회의 권한으로부터 시 부서, 사무실 및 위원회의 권한, 의무 및 기능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면제하기 위한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514 부속조항 (b)에 (8)호를 다음과 같이 새로 추가합니다.

(8) 독립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

섹션 11. 윤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702에 새로운 부속조항 (m)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m) 헌장 및 조례에 규정된 독립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섹션 12. 이 헌장 개정안의 어떤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이 관할 법원이나 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나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이 조의 나머지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이 조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는 위헌이거나 무효로 판정된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이 없었다면 이 헌장 개정안의 모든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을 통과시켰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10년마다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내에서 교육 위원회 지구 경계선을 다시 그리는 독립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시 헌장을 개정해야 합니까?

공정한 요약

SHARON M. TSO, 수석 입법 분석관 작성

Los Angeles 시 헌장(이하 헌장)은 Los Angeles 통합교육구(LAUSD)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10년마다 그리고 연방 인구 조사 후 조례에 의해 채택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위원회 선거구 경계는 모든 위원회 위원 선거, 해임, 위원회 공식 채우기에 사용됩니다. 현재 임명된 자문위원회는 재구획 과정 동안 그러한 경계를 변경하도록 시의회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시장이 최종 선거구 경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법안은 연방 인구 조사 이후 10년마다 위원회 지구 경계를 채택할 권한,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 재구획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헌장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미국 헌법, California 헌법 및 연방 투표권법을 준수하여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그어야 하며, 헌장과 기타 시 법률에 명시된 재구획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의 개입 없이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최종 위원회 선거구 경계는 위원회에 의해서만 승인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재구획에 관해 대중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공청회와 청문회를 진행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 및 고려하고, 재구획 과정과 관련하여 시장,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시하고, 시 법률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기타 재구획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공청회 외에 재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이나 조직과 소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원회는 시 법률이 승인한 바에 따라 18세 미만의 개인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의 개입 없이 선정되며, 14명의 위원과 4명의 교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연방 인구 조사가 실시된 후 10년마다, 늦어도 숫자가 0으로 끝나는 각 해의 4월 1일까지는 설치됩니다. 위원회의 각 위원은 선출된 날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이 선출되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출 당시에 18세 이상이며 LAUSD 거주자여야 합니다.
- 지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최소 3년 동안 LAUSD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 협업 기술, 공적 참여 경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등록된 유권자 또는 미국 시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어떤 사람도 지원서 제출 전 최소 4년 동안 LAUSD 직원 또는 LAUSD 위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독립 재구획 위원회의 자격 요건에 관한 California 주 선거법 조항에 명시된 정치 및 로비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원회 위원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내역과 기타 재산 공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개인은 교육위원회 선출직 위원이나 교육위원회 선출직 공직자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이들을 위해 일하거나, 자원 봉사를 하거나, 선거운동 기여를 할 수 없으며, 다른 집행기구의 재구획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위원은 직무를 상당히 소홀히 하거나 직무상 기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해임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해임은 시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 사무국이 위원회 신청 절차를 관리하고 윤리위원회가 감독을 담당합니다.

이 헌장 수정안은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정적 영향 보고서 **MATTHEW W. SZABO, 시 행정관 작성**

이 법안은 10년마다 Los Angeles 통합교육구(LAUSD)를 위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재구획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 보상은 현재 알려지지 않은 금액으로 조례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시 사무국과 윤리위원회가 위원 선출을 지원하고, 시 사무국이 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지원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 보상은 조례를 통해 정해지고, 시 부서 행정 비용은 행정 절차가 수립되면 시의 연간 예산 절차의 일부로 처리되지만, 실제 비용은 위원 업무량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2028~29년부터 부분 연간 비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일반 기금에 \$1,163,746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9~2030년 전체 연간 비용은 \$2,485,756로 추정됩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간에 누적되는 비용은 약 \$6,161,630로 예상됩니다. 비용은 LAUSD에 의해 보전됩니다.



현장수정안 제LL호에 대한 찬성론

현장수정안 제LL호에 대한 찬성 – Los Angeles 통합교육구 독립 재구획 위원회

Los Angeles 통합교육구(LAUSD)의 가족과 학생은 정치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커뮤니티의 대표성을 우선시하는 선거구 재구획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선거구 경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 선거구 재구획 절차는 위원회 선거구 경계가 설정되는 위치를 결정하고, LAUSD 위원회에서 어떤 커뮤니티가 대표성을 가지는지, 어떤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는 현직 정치인들이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결정합니다. 이 절차는 LAUSD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 가족,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정치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에게 재구획할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장수정안 제LL호는 LAUSD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중요한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을 정치인과 완전히 분리할 것입니다. 독립 재구획 위원회는 California의 다른 수많은 관할권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초당파적 개혁입니다. 이를 통해 LAUSD 내에 거주하는 선입견이 없고 편향적이지 않은 주민들이 대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수정안 제LL호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 독립 재구획 위원회 위원에게 정치인의 영향 없이 LAUSD의 새로운 선거구 재구획 계획을 채택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대중의 의견을 요구합니다.
- 선거구 내 도시와 비통합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LAUSD 커뮤니티의 대표성을 보장합니다.
- 관심 커뮤니티가 위원회 선거구에서 진정으로 대표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 게리맨더링을 금지하고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현재 LAUSD 학생의 학부모와 보호자가 위원회에서 대표성을 갖도록 합니다.
- 청소년과 학생, 교육구 직원과 교사 등을 포함한 LAUSD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는 2030년에 중요한 업무를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할 것입니다.

현장수정안 제LL호에 찬성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수정안 제LL호에 대한 찬성론 서명자

COMMON CAUSE
Dan Vicuna
재구획 및 대표성 이사관

JACKIE GOLDBERG
위원회 의장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TANYA ORTIZ FRANKLIN
위원회 위원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HECTOR SANCHEZ
부 정치이사관
Community Coalition

JOHN KIM
의장 겸 CEO
Catalyst California

DAVID LEVITUS
집행이사관
LA Forward Institute

VANESSA ARAMAYO
CEO 겸 회장
Alliance for a Better Community

이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현장수정안 제LL호에 찬성하는 반박론

현장수정안 제LL호에 찬성 투표를 하면 학부모, 가족, 일반 시민이 Los Angeles 통합 교육구(LAUSD)의 선거구 재구획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정치인이 유권자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수정안 제LL호는 선거구 **재구획 과정에서 LAUSD 학생과 가족을 우선시하고** 정치인들이 교육 선거구 경계를 게리맨더링하지 못하게 예방합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 투표를 하면 자격을 갖춘 편견 없는 커뮤니티 회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가 이 과정을 주도하는 것을 지지하게 됩니다. 커뮤니티 구성원은 LAUSD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정치인이 자신의 선거구를 그리는 과정에 내재된 이해상충을 제거합니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를 도입한 관할 구역에서는 시민의 참여도가 높고 게리맨더링이 적으며 개별 정치인의 이익이 아닌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선거구가 존재합니다.” – Los Angeles Times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시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장수정안 제LL호에 **찬성**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수정안 제LL호에 찬성하는 반박론에 서명하는 사람

CALIFORNIA COMMON CAUSE
Russia Chavis Cardenas
투표권 및 재구획 프로그램 관리자

DR. LORAIN LUNDQUIST
전 위원
2021년 LAUSD 재구획 위원회

EDDIE ANDERSON 목사
2020년 LA 시 재구획 위원회 위원

KRISTINE WILLIAMS
부의장 - 전략적 이니셔티브
커뮤니티 개발 기술 센터

HENRY PEREZ
집행이사관
InnerCity Struggle

LAURICE SOMMERS 및 MARY DICKSON
공동 의장
Los Angeles 지역 여성 유권자 연맹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헌장 또는 기존 헌장 절에 추가되는 새 조항이나 문구는 밑줄로 표시되고, 헌장 또는 기존 헌장 절에서 삭제되는 단어는 취소선으로 표시됩니다.

헌장 수정안 LL호

섹션 1. Los Angeles 시 헌장에 추가된 섹션 810~819는 다음과 같습니다.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독립 재구획 위원회.

섹션 810. 위원회 설립 및 목적.

(a) 헌장 및 조례에 규정된 권한, 의무 및 책임을 갖는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독립 재구획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있습니다.

(b) 위원회의 목적은 시민의 참여와 절차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에 힘을 실어주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독립적인 재구획 절차를 통해 교육 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섹션 811. 위원회 조직, 권한 및 의무.

(a) 위원회는 14명의 위원과 4명의 교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b) 10년마다 연방 인구 조사 후 새로운 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위원회 위원은 숫자 0으로 끝나는 각 해의 4월 1일까지 선출됩니다.

(c) 위원회의 각 위원 임기는 해당 위원이 선출된 날부터 시작되며, 후임 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이 선출되는 시점에 만료됩니다.

(d)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1) 10년마다 실시되는 각 연방 인구 조사 후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의 교육 위원회 선거구 경계 채택

(2) 헌장 및 조례에 명시된 선거구 재구획 기준과 절차 준수

(3) 선거구 재구획 과정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방식으로 이행

(4) 선거구 재구획에 대해 시민에게 교육하고 알리고, 선거구 재구획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요청하고 장려하며, 접근 가능한 공개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선거구 재구획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5) 선거구 재구획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 시의회 및 시 윤리위원회에

권고

(6) 조례에 규정된 기타 재구획 기능 수행.

(e)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거쳐 선정된 청소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섹션 812. 위원 자격 및 제한 사항.

(a) 각 위원회 위원은 조례로 더 낮은 최소 연령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 위원회 위원은 선정 당시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거주자이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3년 이상 Los Angeles 통합 교육구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원은 등록된 유권자 또는 미국 시민일 필요는 없습니다.

(b)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4년 동안 한 번이라도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직원 또는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지원하거나 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c)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독립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의 자격 요건에 관한 California 주 선거법 조항에 명시된 정치 및 로비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지원하거나 위원회에서 활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d) 위원회 지원자는 협업 기술, 공적 참여 경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e)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위원회 위원은 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선출직 교육위원회 공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공직 후보를 위해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선거운동 기부금을 낼 수 없으며, 다른 정부 기관의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f) 위원회 위원 또는 전 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더 짧은 것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았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10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위원회의 선출직 후보자가 되는 것.

(2) 위원으로 활동했던 위원회에서 채택한 선거구 경계를 사용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교육위원회 선출직 후보자가 되는 것.



(g) 더 짧은 것을 기준으로, 위원회 위원 또는 전 위원은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4년 동안 또는 위원회에 선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Los Angeles 통합 교육구의 다른 위원회 임명의 수락.

(2) 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선출직 교육위원회 후보자의 유급 직원으로 고용되거나 컨설턴트로서 보수를 받는 행위.

(3)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와 비경쟁 입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의 등록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행위.

(5)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의 다른 공직에 대한 임명의 수락.

(h) 위원회 대체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자격 요건, 행동 기준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섹션 813. 위원 선정 및 해임.

(a) 예비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숫자 9로 끝나는 각해의 4월 1일까지 시작해야 합니다.

(b) 시 사무국이 위원회 신청 절차를 관리하고 시 윤리위원회가 감독을 담당합니다. 시 사무국 및 시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책임을 직원 또는 컨설턴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c) 시 사무국은 위원회 신청 절차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아웃리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며, 소외된 커뮤니티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과 조례에 명시된 대로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 사무국은 제출된 신청서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공개하며, 지원자 풀에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보유하고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의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아웃리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d) 위원회에서 활동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해관계자는 시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 사무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섹션 812의 부속조항 (a)부터 (c)까지 명시된 객관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구성된 지원자 풀을 구축해야 합니다.

(e) 시 사무국은 공개 검토를 위해 지원자 풀에 개인의 이름을 게시하고, 시민이 지원자 풀에 있는 개인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 윤리위원회는 시민이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여 지원자 풀에서 특정 개인을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f) 공개 검토 기간 이후, 시 윤리위원회는 지원자 풀에 있는 개인의 신청서를 평가하여 섹션 812의 부속조항 (a)부터 (d)까지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파악하고 누가 위원회 선정 풀에 포함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 선정 풀이 구축된 후, 시 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위원회 선정 풀에 포함된 개인의 지속적인 자격 요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습니다.

(g) 시 사무국은 공개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7개 교육위원회 지역에서 각각 1명을 선정합니다. 이 선정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7개 교육위원회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총 7명을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h) 선정된 7명의 위원은 위원회 선정 풀에 있는 나머지 모든 지원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7명의 위원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이러한 선정은 인종, 민족, 성별, 젠더, 성적 지향, 연령, 소득, 직업, 지리적 다양성 등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관련 경험과 배경,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지역에 대한 친숙함,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초기 위원 7명 중 2/3의 투표로 공개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단,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식이나 비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선정은 위원회 위원 14명 중 최소 4명이 선정 시점에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라는 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i) 14명의 위원이 선정되면 위원회는 위원회 선정 풀에 있는 나머지 지원자 중에서 4명을 대체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대체 위원의 선정은 대체 위원 간의 지리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j) 위원회는 중대한 직무 태만, 중대한 직무상 위법 행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섹션 812에 명시된 위원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무단 결석 또는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위원에게 공청회를 고지하고 서면 및 공청회에서 답변할 기회를 제공한 후 위원회의 2/3가 찬성해야 합니다. 해임된 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시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 위원회는 중범죄 혐의를 받거나 섹션 207(c)에 설명된 공무원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형사 경범죄의 혐의를 받는 위원을 즉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해임은 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해임된 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시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l) 위원이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위원직은 공석이 됩니다.

(m)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 의장은 공개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체 위원 중 1인을 위원으로 선출합니다.



섹션 814. 재구획 기준.

(a) 위원회는 미국 헌법, California 주 헌법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을 준수하는 통합 교육구 경계를 채택해야 합니다. 각 선거구는 연방 투표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편차가 요구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거구와 합리적으로 동등한 인구수를 가져야 합니다.

(b) 위원회는 부속조항 (a)의 요건을 따르는 것 외에 다음 우선순위와 기준에 따라 교육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채택해야 합니다.

(1) 선거구는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합니다. 인접한 모서리 지점에서만 만나는 지역은 연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수원으로 분리되어 있고, 다리, 터널 또는 정기 페리 서비스로는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인접한 지역이 아닙니다.

(2) 이 부속조항의 이전 기준과 상충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최대 한도 내에서 지역 동네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지리적 통합성은 분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커뮤니티"란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표성을 위해 단일 선거구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구 집단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커뮤니티의 특성에는 교육, 공공 안전, 공중 보건, 환경, 주택, 교통, 사회 서비스 이용과 같은 공공 정책에 대한 공통 관심사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커뮤니티의 특성에는 또한 문화권, 공유된 사회경제적 특성, 유사한 유권자 등록률 및 참여율, 공유된 역사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커뮤니티에는 정당, 현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와의 관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실행 가능한 최대 한도 내에 있고 이 부속조항의 이전 기준과 상충하지 않는 경우, 선거구는 자연 및 인공 장벽, 거리 또는 Los Angeles 통합 교육구의 경계에 따라 경계가 결정됩니다. 선거구 경계는 주민들이 쉽게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실행 가능한 최대 한도 내에 있고 이 부속조항의 이전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 더 멀리 있는 인구를 위해 가까운 인구를 우회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리적 밀집도를 높여 선거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c) 위원회는 현직자, 정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유리하게 하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선거구 경계를 획정해서는 안 되며, 현직자 또는 후보자의 거주지는 선거구 경계 획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d) 위원회는 선거구 경계를 채택할 때 경제 및 문화적 랜드마크 및 자원에 대한 커뮤니티 및 문화적 연관성을 고려하는 등 기타 추가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 기준에 관한 모든 결정은 공개 회의에서 고려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추가 기준은 부속조항 (a)부터 (c)까지의 해당 요건을 준수하여 고려해야 하며 이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e) 위원회가 선거구 경계를 채택한 후, 위원회는 가능한 한 많은 주민에 대해 거주지 교육위원회 선거구 수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교육위원회 선거구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섹션 815. 공개 회의, 아웃리치 및 접근성

(a) 위원회는 랄프 엠 브라운법 및 기타 해당 공개 회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위원회는 소외된 커뮤니티와 비영어권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선거구 재구획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위원회는 선거구 재구획 절차의 각 단계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청회와 워크숍을 개최해야 합니다.

(d) 위원회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위원회 회의에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며,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연방법 및 주 법률에서 요구하는 언어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e) 위원회는 장애인과 노인이 위원회 회의 및 청문회에 접근하고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f) 증언 제공의 목적상, 시 교육위원회 위원은 시민과 동일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g) 일방적인 의사교환.

(1) 위원회 위원은 공개 회의 외에는 선거구 재구획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다른 위원, 위원회 직원, 법률 고문 또는 위원회가 고용한 컨설턴트와의 의사소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 문제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되는 경우 시 직원 및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2) 위원회의 전무, 위원회의 지도제작 직원 또는 지도제작 컨설턴트,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위원회 직원은 공개 회의 외에는 선거구 재구획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선출직 시 공직자, 선출직 교육위원회 또는 시 공직 후보자 또는 해당 공직자 또는 후보자의 직원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행정 문제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되는 경우 시 직원 및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3) 시 윤리위원회 위원, 시 사무국 또는 위원회 위원 선출 절차에 관여하는 기타 시 부서의 위원이나 직원은 해당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개 회의 외부에서 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선출직 시 공직자, 선출직 교육위원회 또는 시 공직 후보자, 그 직원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선출 절차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행정 문제, 법률 자문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되는 경우의 의사소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4) 위원회는 해당 규칙이 브라운법을 준수하고 이 부속조항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공개 회의에서 채택된 경우, 의사소통에 관한 다른 규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섹션 816. 위원회의 사무, 행정 및 인사 행동 강령.

(a) 위원회의 각 위원과 대체 위원은 California 주 정치개혁법에 따라 채택된 위원회 이해충돌 규범을 준수하여 지정된 직원이어야 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 윤리위원회에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및 기타 재정 공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위원회의 2/3가 승인해야 하는 다음 조치를 제외한 공식 조치에는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 표결이 필요합니다.

(1)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에 대한 투표

(2) 위원 해임 투표

(3) 섹션 813(h)에서 설명하는 위원 7명의 선정 투표

(4) 최고책임자, 지도제작 자문위원 또는 지도제작 직원, 위원회에서 핵심 직원으로 지정한 기타 직책의 채용을 위한 투표

(5) 주 및 시 법률에 따라 해당 권한이 위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 또는 계약 권한의 위임을 승인하는 투표

(c) 위원회의 대체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지만 투표할 수 없으며, 정족수 성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할 위원 1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다른 공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 초안 및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에 대한 선거구 경계 개발 원칙은 공개 회의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의 투표로 승인됩니다.

(f) 위원회는 위원회 청문회 또는 회의에서 고려하기 전에 제안된 지도 원칙 및 제안된 최종 지도를 위원회 웹사이트에 최소 7일 동안 게시해야 합니다.

(g) 위원회는 최고책임자 및 선거구 재구획, 기술 및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이 직책은 헌장의 공무 수행 조항에서 면제됩니다.

(h) 위원회는 헌장의 계약 조항과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경쟁 절차를 통해 컨설턴트를 고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i) 시 사무국은 위원회가 시 자원에 접근하고, Los Angeles 시 및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부서 및 직원과 협력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행정적 문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j) 위원회는 시 검사를 법률 고문으로 활용하거나 시 검사에게 위원회를 위한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817. 최종 재구획 계획의 채택.

(a) 위원회는 늦어도 숫자 0으로 끝나는 각 해의 9월 30일까지 새로운 교육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는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을 채택해야 합니다.

(b) 위원회가 부속조항 (a)의 기한까지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시 검사는 즉시 상급 법원에 섹션 814에 설명된 재구획 기준에 따라 새로운 교육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규정하는 명령을 청원해야 하며, 해당 경계는 위원회가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을 채택할 때까지 교육위원회 선거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c) 위원회는 최종 계획과 더불어, 섹션 814에 설명된 선거구 재구획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d)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이 채택되면 위원회는 계획, 최종 보고서 및 기타 첨부 자료를 시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 자료를 위원회의 선거구 재구획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e) 시 사무국은 위원회의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과 보고서를 시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시 사무국은 시 조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새로운 교육위원회 선거구 경계에 대한 최종 계획과 설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f) 새로운 교육위원회 선거구를 설정하는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은 헌장 조례 규정에 따라 공표된 날로부터 31일 후에 발효됩니다.



(g) 최종 선거구 재구획 계획은 시 조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h) 선거구 재구획 설정으로 인한 선거구 경계 또는 위치 변경은 해당 교육위원회 위원이 선출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당 위원의 임기를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i) 위원회가 채택한 선거구 경계는 법적 소송을 해결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번 연방 10년 인구 총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j) 시에 합병되거나 시와 통합된 지역은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가 인접한 선거구에 추가합니다. 이는 합병 또는 통합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섹션 818. 위원회 자금 조달.

(a) 시의회와 시장은 위원회 직원, 컨설턴트 및 법률 고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선거구 재구획 절차에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서 위원회의 행동을 변호하는 등과 같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b) 시의회와 시장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지원, 위원회 기록 유지와 관련된 모든 시 부서에 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c)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시 부서를 포함하여 Los Angeles 시에서 발생한 비용을 시에 환급해야 합니다.

(d) 위원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섹션 819. 위원회 권고.

(a)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 분석 및 데이터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시 헌장 및 행정법에 명시된 독립적인 선거구 재구획 절차의 변경을 시 윤리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b) 시 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고 선거구 재구획에 관한 시 헌장 및 행정법 개정 권고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권고안에 행정법의 개정이 포함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시 감사의 도움을 받아 권고된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을 준비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c) 행정법의 개정. 시의회는 선거구 재구획에 관한 행정법 개정을 권고하는 윤리위원회 보고서 및 그에 수반되는 조례안이 제출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안된 조례안을 변경 없이 승인하거나 비승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의회가 60일 이내에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제안된 조례안은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상정되며, 시의회에는 시장의 거부권을 재의결할 수 있도록 상정됩니다. 시장이 승인하거나 시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장의 거부를 뒤집고 의회가 승인한 경우, 제안된 조례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d) 현장 개정. 선거구 재구획에 관한 시 현장 개정을 권고하는 윤리위원회 보고서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현장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시기적절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시 현장을 개정하려면 시 유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섹션 2. Los Angeles 시 현장 섹션 802는 다음과 같이 폐지됩니다.

섹션 802. 교육위원회 선거구 재구획.

(a) **조례에 따른 선거구 재구획.** 시의회는 10년마다 조례에 따라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를 1학군부터 7학군까지 조례에 지정된 7개 학군으로 재분할합니다. 해당 선거구는 조례 발효일 이후 새로운 선거구가 신설될 때까지 교육위원회 위원의 소환을 포함한 모든 선거와 교육위원회 위원직의 결원 충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b) **재구획 위원회.**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선거구 경계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에 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됩니다: 교육위원회 각 위원에 의해 1인, 시의회 의장에 의해 4인, 시장에게 의해 4인. 섹션 501(d)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 한 명과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 한 명은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에 속하되, 시 경계 밖의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교육구의 임원이나 직원은 위원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재구획 위원회는 예산 승인에 맞추어 이사 및 기타 직원을 임명하며, 이 직책은 현장의 공무 수행 조항에서 면제됩니다.

(c) **재구획 절차.** 재구획 위원회는 인구 조사국이 10년마다 인구 조사 데이터를 발표하는 날짜 전까지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후 선거구 구획을 다시 설정하기 전에 시의회에 자문을 제공할 새로운 위원회가 임명됩니다. 위원회는 임명 후 언제든지 선거구 재구획 절차를 시작하되, 늦어도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 10주년이 되는 날짜까지 시작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선거구 재구획 절차 전반에 걸쳐 시민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조례로 정한 날짜까지 선거구 재구획 제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늦어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 10년이 되는 날짜까지 선거구 재구획 조례를 채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설정된 선거구에 선거구 구획 설정 직전의 연방 인구 조사 또는 시의회가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타 인구 보고서/추정치에 근거한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전체 인구의 거의 동일한 부분이 포함되는 한, 이 절의 어떠한 조항도 시의회가 더 자주 선거구 구획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d) **재구획 기준.** 모든 선거구는 주 및 연방법의 요건을 준수하여 구획이 설정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지역과 커뮤니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연 경계 또는 도로선을 활용하고 지리적으로 간단해야 하며 고등학교 통학 구역에 상응해야 합니다.

(e) **선거구 재구획이 현직자에게 미치는 영향.** 선거구 재구획 설정으로 인한 선거구 경계 또는 위치 변경은 해당 교육위원회 위원이 선출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당 위원의 임기를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f) **합병 또는 통합.** 선거구 구획 설정 조례가 채택된 후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에 추가되는 지역은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인접한 선거구에 추가합니다.

(g) **임기.**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섹션 806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4년입니다. 홀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섹션 806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9년으로부터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되며, 짝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81년으로부터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되어 2020년까지로 합니다. 2020년부터 홀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20년으로부터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되며, 짝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22년으로부터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됩니다. 누구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세 번 이상 임기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임기 횟수 제한은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의 남은 임기가 전체 임기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만료되지 않은 임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기 횟수 제한은 2007년 3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임기에만 적용됩니다.

섹션 3.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806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섹션 806. 교육위원회 공직 임기.

(a)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부속조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4년입니다.

(b)(a) 헌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새로운 선거 날짜로 전환하기 위해 2015년에 선출된 교육위원회 위원은 2020년 12월에 만료되는 임기로 선출되며, 2017년에 선출된 위원은 2022년 12월에 만료되는 임기로 선출됩니다.

(c)(b)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부터 홀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0년으로부터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됩니다. 짝수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2년으로부터 매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자신의 선출 직후 12월의 두번째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d)(c) 누구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세 번이 넘는 임기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임기 횟수 제한은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의 남은 임기가 전체 임기의 1/2 미만인 경우의 만료되지 않은 임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기 횟수 제한은 2007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임기에만 적용됩니다. 이 섹션의 목적에 따라 섹션 802(g)에



포함된 임가 제한의 경우, 이 섹션의 부속조항 (b)(a)에 설명된 대로 2015년과 2017년에 선출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하나의 임기로 간주합니다.

섹션 4. 이 헌장 개정안의 어떤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이 관할 법원이나 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나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이 조의 나머지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그를 위해 이 조항의 규정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는 위헌이거나 무효로 판정된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이 없었다면 이 헌장 개정안의 모든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을 통과시켰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HH 시 관리, 임명, 선거. 현장수정안 제 HH 호.

위원회 임명인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 공개를 제출하게 하고, 시 계약업체에 대한 관리자의 감사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시 감사의 소환권을 확대하고, 특정 총책임자 지위에 대한 임시 임명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 법안 발의 청원에 의해 제안된 법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시 관리, 임명, 선거에 대한 기타 변경 사항 및 설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 헌장을 개정해야 합니까?

공정한 요약 SHARON M. TSO, 수석 입법 분석관 작성

Los Angeles 시 정부의 기본법은 시 헌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헌장은 시 정부의 구조, 책임, 기능, 절차, 권한을 정합니다. 시는 시 관리, 임명, 선거와 관련하여 시 헌장에 대하여 다양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명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 헌장은 시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 헌장을 수정하여 시의 관리, 임명 및 선거에 관한 다양한 변경 사항 및 설명을 적용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의회 위원이 해당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동 권한 기관의 이사회에서 근무하도록 허용.
- 제안된 조치의 반대에 관한 시의회 투표 규칙을 명확히함.
- 시 기금을 수령하거나 관리하는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기록과 직원에 접근할 수 있는 시 감독관의 감사 권한을 명확히함.
- 시 감사의 소환권을 확대하여 주 또는 지방 법률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인 소환, 선서 및 확인 관리, 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권한을 포함하되, 시 사무실, 부서, 공직자 또는 직원을 조사하는 권한은 포함하지 않음.
- 시 선거 날짜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는 언어를 삭제.
- 주민 법안 발의 청원에 대한 서명 수집 기간과 마감일을 명확히함.
- 시의회가 조례를 채택 또는 폐지하거나 유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시청과 부서가 주민 법안 발의나 주민투표 청원에서 제안한 조례의 영향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을 규정.
- 지지자가 주민투표 청원을 철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시 위원회 또는 위원회 피지명인이 윤리위원회에 재산 공개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의회에서 피지명인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공개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



- 항만 위원회의 위원 2명이 항만 지역에 거주하도록 요구. 한 명은 San Pedro에 다른 한 명은 Wilmington 커뮤니티에 거주하도록 요구.
- 공석이 발생할 경우 공공책임사무국 임시 집행이사관을 임명하는 방법을 마련.
- 공석이 발생할 경우 연금 또는 은퇴 시스템의 임시 총책임자를 임명하는 방법을 마련.

이 법안은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정적 영향 보고서 **MATTHEW W. SZABO, 시 행정관 작성**

이 법안은 위원회 및 기타 시 직위에 대한 임명을 포함하여 시 통치구조와 관련된 시 헌장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주민 법안 발의 청원을 통해 제안된 법률의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시 계약업체에 대한 감독관의 감사 권한을 명확하게 하며, 시 감사의 소환권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변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기금지출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역할 명확화, 절차 수립, 시 감사의 소환권 확대로 인해 기존 자원으로 흡수되거나 흡수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시 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영향을 받는 부서에 들어갈 비용을 파악할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장수정안 제HH호에 대한 찬성론

현장수정안 제HH호는 시 현장에서 낡은 표현을 없애고, 윤리적 허점을 보완하며, 시 거버넌스에 절실히 필요한 몇 가지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 현장수정안 제HH호는 시 검사에게 잠재적인 법 위반 또는 기타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증인을 소환하고 증거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현재 현장에 사용된 문구는 Los Angeles 시민을 대신하여 정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시 검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현장수정안 제HH호는 시 감사관에게 시 자금을 지출하거나 수령하는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자의 재무 기록과 인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시 계약은 투명해야 하며, 시 자금을 받는 사람은 그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현장수정안 제HH호는 후보자의 재정 공개 명세서가 윤리위원회, 시의회 및 대중에게 제출될 때까지 시 위원회에 대한 위원 임명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 위원회 임명이 승인되기 전에 이해충돌이 있으면 위험 신고해야 합니다.
- 현장수정안 제HH호는 유권자 발의안을 제정하거나 유권자가 결정하도록 투표에 부치기 전에 시의회가 30일간 재정적 영향이나 그 외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유권자는 제안된 발의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 현장수정안 제HH호는 Los Angeles 항구 운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하도록 항만위원회의 구성을 수정합니다. 우리의 항구는 지역 전체의 경제적 원동력 역할을 하며, 주변 커뮤니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안은 항만위원회에 지역 대표성을 요구함으로써 항만 지역 주민, 기업 및 근로자의 우려와 경험을 제고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현장수정안 제HH호 찬성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헌장수정안 제HH호에 대한 찬성론 서명자

PAUL KREKORIAN
제2 선거구 시의원
Los Angeles 시

TIM MCOSKER
제15 선거구 시의원
Los Angeles 시

이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수정안 제HH호에 찬성하는 반박론

현장수정한 제HH호는 시 헌장을 개정하고 시 거버넌스에 필요한 여러 개혁을 추진합니다.

현장수정안 제HH호는 시 검사에게 민사 사건에서 증인을 소환하고 증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현장수정안 제HH호는 시로부터 지급을 받는 회사에 대한 의미 있는 감사를 제공하고 시 감사관에게 해당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현장수정안 제HH호는 시 위원회에 임명된 사람이 확정되기 전에 시의회가 재정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발의안이 유권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비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현장수정안 제HH호는 항만위원회(Los Angeles 항만을 관할하는)에 항만 운영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항만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책임감 있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위해 투표하세요.

현장수정안 제HH호 찬성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수정안 제HH호에 찬성하는 반박론에 서명하는 사람

PAUL KREKORIAN
제2 선거구 시의원
Los Angeles 시

TIM MCOSKER
제15 선거구 시의원
Los Angeles 시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현장 또는 기존 현장 절에 추가되는 새 조항이나 문구는 밑줄로 표시되고, 현장 또는 기존 현장 절에서 삭제되는 단어는 취소선으로 표시됩니다.

현장 수정안 HH호

섹션 1. Los Angeles 시 현장 섹션 212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시의회 의원은 선출된 임기 동안 시의회에서 임명되거나 시의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다른 직책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은 시의회 의원이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 공동 권한 기관의 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섹션 2. Los Angeles 시 현장 섹션 244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시의회 의원의 2/3가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합니다. 4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시의회 의원의 결원을 채우는 데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결원을 채우는 것 외에는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현장의 조항과 무관하게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의회의 조치는 시의회 전체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승인 또는 비승인이 필요한 제안된 조치에 대해 시의회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 해당 표결은 비승인을 위한 별도의 투표 없이 시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장에서 어떤 행위의 수행을 위해 시의회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비율은 시의회 전체 의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섹션 3. 시 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Los Angeles 시 현장 섹션 261절의 부속조항 (e)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e)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부 감사 기준에 따라 시 자금을 수령하거나 지출하는 독점 부서를 포함하여 모든 부서와 사무실을 감사하고,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 자금을 지출하거나 수령하는 시 계약자 및 하청업체를 포함한 모든 부서 기록과 인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모든 부서의 성과, 프로그램 및 활동이 정기적으로 감사되도록 감사 주기를 설정하고, 완성된 감사 보고서를 시장, 시의회 및 시 감사에게 즉시 제공하고, 해당 보고서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섹션 4. 시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Los Angeles 시 현장 섹션 271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부속조항 (f)를 추가합니다.

(f) 현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 감사가 집행 권한을 가진 주 또는 지방의 법률 위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 감사는 증인을 소환하고, 증인이 출석 및 증언을 하도록 하고, 선서 및 확인을 집행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서적, 문서, 기록 또는 기타 항목의 작성을 요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서면 심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단, 이 부속조항에서 부여한 권한에는 시 사무실, 부서, 임원 또는 직원을 조사하거나 시 사무실, 부서, 임원 또는 직원에게 문서를 작성하거나 증언할



것을 강제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장 또는 조례로 지정된 기타 담당자는 이러한 모든 소환장 또는 기타 서면 명령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소환장 불응과 증인의 증언, 증거 제출 또는 서면 심문에 대한 답변 거부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조례로 규정해야 합니다.

섹션 5.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401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a) ~~2020년까지 시 공직 및 교육위원회 선거의 경우, 예비선거는 매 홀수 해 3월 첫 번째 월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에, 시의 총선거는 매 홀수 해 5월 셋째 화요일에 실시하되, 2019년에는 (b)에 규정된 새로운 선거일로 전환하기 위해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b) ~~2020년부터~~ 시 공직 선거, 교육위원회 선거 및 예비선거는 짝수 해 3월 첫 번째 월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에, 총시선거는 짝수 해 11월 첫 번째 월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에 실시합니다. 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예비선거 및 총시선거의 날짜를 다르게 지정하여 주 전체 예비선거 및 총선거와 같은 날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섹션 6. 발의 청원에 관한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451의 부속조항 (b)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b) 청원서에 서명한 모든 이름은 청원 제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확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 외에 첨부된 서명은 청원의 충분성을 판단하는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 발의 청원이 시의회에 상정되려면 시 사무국이 청원서 작성을 청원서 회람 제출을 승인하는 날짜 이전에 가장 최근 시장 선출 시의총선거 또는 예비선거에서 시장직 후보자 전체에 대한 투표 수의 15%에 해당하는 Los Angeles 시에 등록된 유권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시 사무국에 청원서가 접수되려면 청원서에 필요한 만큼 서명 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섹션 7. 발의 청원과 관련된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452의 부속조항 (b)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b) 제안된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채택하도록 요청하는 발의 청원을 시 사무국이 의회에 상정하면 시의회는 발의자가 청원을 철회하지 않는 한 상정 후 20일 이내에 다음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제안된 조례안을 변경 없이 채택.

~~(2) 청원에 대한 시의회의 조치가 있는 후 110-140일 이내에 특별선거를 소집하여 제안된 조례안을 변경 없이 시 유권자의 투표에 부침.~~

~~(2)(3) 청원에 대한 시의회의 조치가 있는 후 110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실시될 예정인 특별선거, 다음 정기 시 선거 또는 다음 주 전체 선거 또는, 청원에 대한 시의회의 조치가 있는 후 110일 이상 경과하여 실시될~~



예정인 Los Angeles 카운티의 다음 주 전체 선거에서 제안된 조례안을 변경 없이 제출하여 시 유권자의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 혹은.

(3) 제안된 조례안이 시에 미치는 재정 및 기타 영향을 보고하기 위해 해당 부서 또는 사무실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시의회는 제안된 조례안을 보고하도록 회부한 후 30일 이내에 이 부속조항의 (1) 또는 (2)호에 설명된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섹션 8. 주민투표 청원에 관한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462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a) 주민투표 청원 발의자는 시 선거법 절차에 따라 청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b) 시 사무국이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원을 제출하면 시의회는 발의자가 청원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제출 후 20일 이내에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1)(a) 조례를 폐지.

(b) 청원에 대한 시의회의 조치가 있는 후 110~140일 이내에 조례를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특별 선거를 소집.

(2)(c) 청원 인증일로부터 110일 이상 경과하여 실시되는 특별선거, 다음 정기 시 선거 또는 다음 주 전체 선거 또는 청원 인증일로부터 110일 이상 경과하여 Los Angeles 카운티에서 실시하는 다음 주 전체 선거에서 조례안을 제출하여 Los Angeles 시 내 유자격 선거권자가 승인 또는 거부하도록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

(3) 해당 조례안이 시에 미치는 재정 및 기타 영향을 보고하기 위해 해당 부서 또는 사무실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시의회는 제안된 조례안을 보고하도록 회부한 후 30일 이내에 이 부속조항의 (1) 또는 (2)호에 설명된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섹션 9. 위원 임명에 관한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502에 새로운 부속조항 (e)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e) 재정 공개. 시의회는 임명자의 재무 공개 명세서가 윤리위원회에 제출되어 시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임명자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부속조항 (a) 및 (b)에도 불구하고, 임명자가 윤리위원회에 임명장을 제출한 후 45일 이내에 임명자의 재무 공개 명세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명자는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섹션 10.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650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항만 위원회는 섹션 502의 규정에 따라 임명 및 해임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San Pedro 내에 거주하는 위원 1명, 항만 지역 주변인 Wilmington 내에 거주하는 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은 조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섹션 11. 공공 책임 사무실 집행이사관과 관련된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683의 부속조항 (b)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b) OPA (공공 책임 사무실)은 집행이사관이 지휘하며, 집행이사관은 공무원 신분이 면제됩니다. 집행이사관은 시민 위원회에서 임기 5년으로 임명하며, 시의회와 시장의 인준을 거쳐 임명됩니다. 시의회는 시 헌장 섹션 575의 부속조항 (e)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절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 집행이사관을 해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규정해야 합니다. 시민 위원회의 구성 및 선정 방식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시민 위원회는 집행이사관 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시의회와 시장의 인준을 거쳐 임명을 통해 이를 충원합니다. 시장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석이 채워질 때까지 임시 집행이사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시민 위원회의 승인 없이 임시 집행이사관이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섹션 12. 연금 및 퇴직 시스템의 총책임자에 관한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1108에 새로운 부속조항 (d)가 다음과 같이 추가됩니다.

(d) **임시 임명.** 총책임자 직책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채워질 때까지 위원회는 6개월 동안 임시 총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시장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섹션 13. 이 헌장 개정안의 어떤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이 관할 법원이나 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나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이 조의 나머지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이 조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는 위헌이거나 무효로 판정된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이 없었다면 이 헌장 개정안의 모든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을 통과시켰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시 행정 및 운영. 헌장수정안 제 II 호.

El Pueblo 사적과 동물원이 공원 소유지임을 명확하게 하고, 부가 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시 고용에 적용되는 차별 금지 규정에 성 정체성을 포함하고, 수수료 및 규정을 정하도록 공학 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시 행정 및 운영에 대한 기타 변경 사항 및 설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 헌장을 개정해야 합니까?

공정한 요약 SHARON M. TSO, 수석 입법 분석관 작성

Los Angeles 시 정부의 기본법은 시 헌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헌장은 시 정부의 구조, 책임, 기능, 절차, 권한을 확립합니다. 시는 시 행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 헌장에 대하여 다양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명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 헌장은 시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 행정 및 운영에 관한 다양한 변경 사항 및 설명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 헌장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처들이 상품이나 식품 판매와 같은 세입 창출 활동에 참여하여 부서 운영을 지원하는 기금을 모금할 수 있음을 명확히함.
- 시 고용에 적용되는 차별 금지와 관련된 헌장 조항에 성 정체성과 성 표현을 포함시킴.
- 현재 관행과 일치하도록 다양한 헌장 조항에 나와 있는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국장"과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국"의 이름을 "시 행정 책임자"와 "시 행정 책임자 사무국"으로 변경. 이 변경 사항은 영향을 받는 헌장 조항을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 도서관,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를 포함한 각 시청 사무실과 부가 헌장, 조례 및 기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동안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지출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함.
- California 공공 기록법에 따라 구역 지정 관리국 규칙과 규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명확히함.
-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가 공원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건물을 건설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Los Angeles 통합교육구에 부지를 임대하는 것을 허용.
- El Pueblo 역사 기념건축물과 Los Angeles 동물원을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위원회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후에도 여전히 전용 공원 자산으로 남아 있음을 명확히함.
- 항만부, 공항부, 수자원부의 총괄 관리자에 대한 임시 직위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



- 항만부, 공항부, 수자원부가 발행한 세입 채권과 관련하여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함.
- 상업 및 개인 소유주가 항공 및 지상 운송 목적으로 공항 자산을 사용하고 접근하는 데 대한 수수료,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는 공항 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함.
- 공항부의 공식 명칭으로 "Los Angeles 세계 공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인사부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 통지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
- 공무원 자격증은 여러 부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함.

이 법안은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정적 영향 보고서 **MATTHEW W. SZABO, 시 행정관 작성**

이 법안은 시 현장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여 다양한 시 행정 및 운영 관행을 공식화합니다. 이 법안은 El Pueblo 기념건축물과 동물원이 공원 자산임을 확인하고, 부처들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고용 차별 금지 규칙에 성 정체성을 포함하고, 공항 위원회가 수수료와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고,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국에서 시 행정 책임자에 대해 현장에 명시된 이름을 다시 정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의 목적은 어느 부에도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현재의 관행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기금사용을 요구하지 않지만,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수료와 규정을 정하는 부에서는 세입 창출과 징수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영향을 받는 부서에 들어갈 비용을 파악할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며, 기존 관행을 공식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입 금액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장수정안 제II호에 대한 찬성론

현장수정안 제II호는 시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만들기 위해 시 현장을 업데이트합니다.

작년에 시의회의 시 거버넌스 개혁 임시 위원회는 모든 시 부서 경영 책임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시 현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방법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현장 문구에 대한 기술적 수정 사항이었으며, 이 수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수정안 제II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Los Angeles 통합 교육구와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 사이에 공동 사용 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들이 더 많은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항위원회가 공항의 지상 운송 및 기타 상업 서비스를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시 시설에서 음식 및 상품 할인을 허용하여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전자 서명 등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California 공공 기록법에 따라 모든 구역 설정 규칙 및 규정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현장 수정안 제II호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 어린이를 위한 공원 공간이 늘어납니다.
- 공항을 오가는 지상 교통편이 개선됩니다.
- 시 양식과 신청서를 원격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간편해집니다.
- 시 행사 및 시설에서 음식과 음료 옵션 제공이 늘어납니다.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부서들이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귀하가 지금 바로 시 헌장을 개정하기 위한 투표를 하여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치에 대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위의 어느 것에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헌장수정안 제II호 찬성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장수정안 제II호에 대한 찬성론 서명자

PAUL KREKORIAN
제2 선거구 시의원
Los Angeles 시

이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현장수정안 제II호에 찬성하는 반박론

현장수정안 제II호는 시 부서들과 기관들이 시민 여러분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 현장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 중 상당수는 기술적인 성격이지만 오랫동안 미뤄져 온 것들입니다. 이 수정안은 단순히 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도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수정안 제II호가 제정되면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더 많은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추가됩니다.

현장수정안 제II호가 제정되면 공항의 기업 운영자로부터 수익을 거둬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이 개선됩니다.

현장수정안 제II호가 제정되면 시 시설과 행사에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음식, 음료 및 상품 옵션이 더 많이 제공됩니다.

현장수정안 제II호가 제정되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 운전, 주차, 시 사무소에서의 줄서기 없이도 여러 가지 시 양식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시 정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세요. 현장수정안 제II호 찬성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수정안 제II호에 찬성하는 반박론에 서명하는 사람

PAUL KREKORIAN
제2 선거구 시의원
Los Angeles 시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헌장 또는 기존 헌장 절에 추가되는 새 조항이나 문구는 밑줄로 표시되고, 헌장 또는 기존 헌장 절에서 삭제되는 단어는 취소선으로 표시됩니다.

헌장 수정안 II호

섹션 1. Los Angeles 시 섹션 104의 부속조항 (g)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g) **기업**. Los Angeles 시는 헌장이 발효될 당시 시에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거나 헌장에서 특별히 승인한 경우 또는 해당 사안에 투표한 시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수 상업 또는 산업 기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부속조항의 어떤 내용도 Los Angeles 시가 직접 소매 할인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식품 및 상품의 소매 할인이 시 운영 및 목적과 일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섹션 2.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104의 부속조항 (i)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i) **차별 금지**. Los Angeles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고용할 때 인종, 종교, 출신 국가, 혈통,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지향, 나이, 장애 또는 결혼 여부를 이유로 선발이나 보상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섹션 3.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01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Los Angeles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시장 사무실

시의회 사무실

시 검사 사무실

시 감사관 사무실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시 행정관 사무실

시 사무국 사무실

재무 사무실

섹션 4.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10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시 감사관, 시 검사, 재무관, 시 사무국 및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국장인 행정관은 각각 보좌관 또는 부관을 지정하며, 해당 보좌관 또는 부관은 사무실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직무 대행이 됩니다.

섹션 5.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33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시장은 일시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거나 특정 사무소 또는 부서의 일시적 또는 계절적 요구로 인한 추가적인 직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독점적 부서를 제외한 다른 사무소 또는 부서로 연중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을 일시적으로



전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직원 전보 시 시 사무국에 통보하고, 시 사무국은 시의회 의장,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국장시 행정관 및 공무원 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보된 직원의 보수는 전보된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이 전보된 사무실 또는 부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임명 권한이 있는 자가 임시 전보에 대해 서면으로 반대를 하는 경우, 시장이 해당 전보 여부를 결정합니다.

섹션 6.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90 앞의 제목을 수정하여 "행정 연구 서비스 사무실"이라는 용어를 "시 행정관 사무실"이라는 용어로 교체합니다.

섹션 7.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90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국장시 행정관은 섹션 508 규정에 따라 임명 및 해임됩니다. 국장시 행정관은 국장시 행정관 직책에 임명되기 직전 10년 이내에 국장급 또는 행정관급으로 5년을 보낸 경력을 통해 입증된 행정 및 집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장시 행정관은 헌장 및 조례에 승인된 수만큼 보좌관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습니다.

섹션 8.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91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국장시 행정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 및 의무가 있습니다.

섹션 9.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91의 부속조항 (h)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h)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시 행정관 사무실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규칙 및 기준을 규정하며, 이를 시의 모든 사무관 및 부서가 준수해야 합니다.

섹션 10.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91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섹션 29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에 명시된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국장시 행정관의 권한과 의무는 독점 부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섹션 11.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92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국장시 행정관은 다양한 직책, 직무, 효율화 방법 및 표준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성과 측정을 개발하기 위해 독점 부서 등을 포함한 시 정부의 모든 임명직 사무실, 부서 및 기타 조직의 조직, 정책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 관리 연구를 수행합니다.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국장시 행정관은 시장, 시의회, 각 부서 및 기관에 시 정부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권고합니다.

섹션 12.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293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섹션 213에도 불구하고, 노사 관계와 관련된 추가적 책임 또는 다른 부서, 사무실 및 위원회의 책임이 아닌 기타 책임은 조례를 통해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시 행정관 사무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 사무실 및 위원회의 책임은 섹션 514에 의거해야만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시 행정관 사무실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섹션 13.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311의 부속조항 (a)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a) 시장이 정하되, 늦어도 매년 1월 1일까지는 자체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 또는 사무실의 장, 기타 시 정부 활동의 각 위원회나 임원은 시장이 정하는 방식과 양식을 준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해당 부서 및 사무실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세부적인 추정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시의회와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국장시 행정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정치에는 통일된 예산 분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수행되는 기능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항목 및 서비스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추정치에 요약, 일정 및 증빙 데이터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을 요청하는 부서장 또는 임원은 증액이 필요한 분류를 명시하고 각 분류에 대해 즉각적인 필요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시장은 사무관 또는 부서장과 협의한 후 해당 부서, 사무실 또는 활동에 대한 최대 금액, 시장이 정하는 최대 금액 또는 시장이 정하는 추가 자격을 기준으로 수정된 추정치를 작성하라는 지침과 함께 추정치를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임원 또는 부서장은 시장이 정한 날짜에 수정된 추정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시의회와 행정 및 조사 서비스 사무실 국장시 행정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14.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311 부속조항 (c)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c) 매년 3월 1일 이전에 시 감사관은 이자 및 감채기금, 시 또는 특별 선거구의 모든 미결제 채무 및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 시 감사관이 추정하는 금액, 그리고 벌금, 면허 및 기타 출처에서 파생될 수입의 추정치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시의회와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국장시 행정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15.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320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일반 시 예산에서 자금을 받는 각 사무실과 부서, 도서관 부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부서(일반 기금에서 세출을 지원받는 한도 내)는 헌장,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책정된 지원 자금을 지출할 권한을 갖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작성, 제출, 수정되는 계획 지출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시 정부의 부서, 국 또는 사무실은 예산이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부채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섹션 16.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342의 부속조항 (a)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a) 조례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체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단, 시 사무국에 이체 사실을 통지하고, 시 사무국은 시의회 의장, 시 감사관,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국장시 행정관에 이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섹션 17.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343의 부속조항 (d)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d) **고지**. 이 절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를 승인하는 기관은 시 사무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시 사무국은 시의회 의장, 시 감사관 및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국장시 행정관에 이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섹션 18.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508의 부속조항 (d)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d) **연례 검토**. 시장은 매년 각 최고행정관을 평가해야 합니다. 시장은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국장시 행정관이 시의회에 관련 지침을 건의한 후 시의회가 정한 지침 범위 내에서 최고행정관의 보수를 책정하거나 조정합니다.

섹션 19.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508의 부속조항 (f)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f) **최고행정관은 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임명하는 최고행정관 또는 집행이사관은 매년 임명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국장시 행정관이 위원회에 관련 지침을 건의한 후 위원회가 정한 급여 지침 내에서 최고행정관 또는 집행이사관의 보수를 정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평가 및 급여 결정 사본을 시장과 시의회에 전달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섹션 20.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561의 세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최고 구획설정 행정관은 조례에 규정된 요건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해당 조례와 상충되거나 불일치하지 않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규칙과 규정은 California 주 공공기록법의 요건에 따라 구획설정 행정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섹션 21.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571의 부속조항 (b) (2)호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2) 매년 경찰청장을 평가하고,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국장시 행정관이 시의회에 관련 지침을 권고한 후 시의회가 정한 급여 지침 내에서 경찰청장의 보수를



책정하거나 조정하며, 평가 및 급여 결정 사본을 시장과 시의회에 전달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섹션 22. Los Angeles 시 현장 섹션 594의 부속조항 (c)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c) **전용 공원 양도에 대한 제한.** 이전 또는 이후에 따로 지정하거나 공원 전용으로 지정된 모든 토지는 공공의 사용을 위해 영원히 불가침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공원의 목적으로, 또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시 소유의 공공 시설과 관련하여 시 또는 그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고 편리한 모든 작업, 개선 또는 구조물에 대한 지역권 또는 통행권. 유사한 상황에서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민간 공익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허가가 주어질 수 있으며, 이는 프랜차이즈의 수명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지역권 또는 통행권은 조례에 의한 규제를 따릅니다.

(2) Los Angeles 카운티, 또는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California 주, 또는 연방에 공공 공원 용도에 부합하는 공공 건물의 건립 및 유지를 위해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공공 공원 내 부지를 임대하는 경우.

(3) 위원회가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해당 건물의 공적 사용 및 향유에 실질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성형 모래 또는 기타 천연 자원의 채취 및 처분.

(4) 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원 부지 안팎의 도로 또는 기타 공공 도로의 개설, 개설 및 유지 관리.

섹션 23. Los Angeles 시 현장 섹션 598이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섹션 598. El Pueblo de Los Angeles Historical Monument 및 Los Angeles Zoo.

(a) 이전에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부서에서 관리 및 운영하던 모든 부동산, 공원으로 헌납된 부동산, 동물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따로 마련된 부동산은 영구적으로 공공 소유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조례로 지정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운영, 관리, 유지 및 통제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위원회가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부서의 재산에 대해 갖는 것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b) 이전에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부서가 관리 및 운영했고, 공원 전용으로 지정되었으며, El Pueblo de Los Angeles Historical Monument를 구성하는 모든 부동산은 공공의 사용을 위해 영구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조례로 지정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운영, 관리, 유지 및 통제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위원회가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부서의 재산에 대해 갖는 것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섹션 24.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604의 부속조항 (b)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b) **연례 검토.** 각 독점 부서 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총책임자를 평가해야 하며,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국장시 행정관이 해당 지침을 건의한 후 시의회가 정한 지침 내에서 총책임자의 보수를 설정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성과 평가 및 급여 결정 사본을 시장과 시의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섹션 25.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604에 새로운 부속조항 (d)가 다음과 같이 추가됩니다.

(d) **대체 직책.** 각 독점 부서의 위원회는 최고집행관 또는 집행이사관 등을 포함한 총책임자의 대체 직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섹션 26.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609의 부속조항 (d)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d) **경쟁 입찰 또는 비공개 매각.** 수익 채권은 경쟁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되어야 하지만, 절차 조례에서 승인한 바에 따라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 비공개 매각 또는 해당 부서와 시의회가 허용하는 기타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1) 부서 위원회는 비공개 매각이 부서에 이익이 되는 이유를 명시한 부서 최고 재무 책임자의 서면 건의를 받아 비공개 매각에 따른 수익 채권 매각을 승인합니다.

(2) 시의회는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 국장시 행정관의 보고를 받은 후, 비공개 매각을 승인합니다.

(3) 시의회는 절차 조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수익 채권의 비공개 매각을 위한 인수 회사 부서의 선정을 부결할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섹션 27. Los Angeles 시 독점 부서가 발행한 수익 채권과 관련된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609의 부속조항 (g) (3)호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3) 수익 채권의 유효성. 이 섹션에 따라 발행되었음이 명시된 수익 채권의 유효성은 헌장의 다른 섹션에 포함된 조항이나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섹션에 따라 발행된 수익 채권에 필요한 서명은 팩스, 또는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1996년 6월 1일 기준으로 기존 헌장 섹션 146, 146.1, 229, 229.1 및 239는 본 섹션이 채택된 후에도 시의회가 본 섹션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조례를 채택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섹션 28. 공항 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632의 부속조항 (a) 및 (b)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요금 및 수수료. 항공 및 지상 운송을 목적으로 상업 및 민간 사업자가 공항 자산을 사용하는 것과 그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설정을 포함하여 공항 자산 및 부서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사용에 대한 요금 및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합니다.

(b) 규칙 및 규정. 상업과 관련된 미국의 국가 권한에 따라, Los Angeles 시 내외에 위치한 시 소유 또는 통제 공항의 사용 및 통제와, 이러한 공항에 인접한 항공로 및 수로의 사용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시행합니다.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은 본 규칙 및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조례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항공 항법 및 비행을 위한 모든 장치의 상승, 착륙, 계류, 이동, 유지 보수, 작동이나 사용, 또는 그러한 작업과 관련하여 편리하거나 필요한 행위 그리고

(2) 공항의 모든 유틸리티, 기계, 건물, 구조물 또는 개선의 설계, 건설, 유지 보수, 사용, 상태 및 운영, 공항 위 또는 내부 굴착, 장애물 및 교통 통제 그리고

(3) 상업 운송 서비스 제공업체의 접근을 포함하여 공항 부지 내 지상 운송의 관리 및 규제

(c) 공항의 개발. 부서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재산, 개선, 유틸리티, 장비, 소모품 또는 시설을 구입, 임대, 취득, 수용, 설계, 건립, 유지, 개선, 수리 및 운영. 수용 권한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섹션 29. Los Angeles 시 헌장에 섹션 637이 신설됩니다.

섹션 637. 부서명.

공항부를 Los Angeles World Airports라고 할 수도 있으며, 공항부는 그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섹션 30. 면제 직책에 관한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1001의 부속조항 (a) (14) 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4) 행정 및 연구 서비스 사무실시 행정관 사무실의 모든 부국장.



섹션 31. 시험 공고에 관한 Los Angeles 현장 섹션 1007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모든 시험의 시간, 장소 및 일반적인 범위에 대한 고지는 인사부 총책임자가 제공하는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전달됩니다.

섹션 32. 공무원직 인증에 관한 Los Angeles 시 현장 섹션 1010에 새로운 부속조항 (f)가 추가됩니다.

(f)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여러 부서에서 인증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섹션 33. 이 현장 개정안의 어떤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이 관할 법원이나 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나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이 조의 나머지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이 조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는 위헌이거나 무효로 판정된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이 없었다면 이 현장 개정안의 모든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을 통과시켰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시 윤리위원회의 최소 연간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 결정 및 고용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제한된 상황에서 위원회가 외부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원회 구성원에게 추가 자격 요건을 부과하고, 시 위원회가 위원회 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도록 요구하고, 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시 헌장을 개정해야 합니까?

공정한 요약
SHARON M. TSO, 수석 입법 분석관 작성

윤리위원회는 Los Angeles 시에서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면서도 시 정부와 선거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금, 잠재적 계약업체 및 개발업체와 관련된 시 계약, 정부 윤리 및 로비에 관한 시 및 주 법률을 관리해야 합니다.

2023년에 의회는 시 헌장을 개혁하기 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윤리위원회는 시의회에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독립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 헌장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정책 및 절차와 관련된 행정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여러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시 헌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 윤리위원회에 임명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금지 사항을 추가하여 임명 기관의 친척이나 다른 선출직 시 공직자, 선거운동 컨설턴트 또는 선거운동에 대한 주요 기여자의 친척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합니다.
- 위원회 위원과 집행이사관의 임기 중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로부터 재량적 승인을 구하는 기업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가지는 것, 선거운동에 주요 기여자로 참여하는 것, 선거운동에 대한 유료 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한 사항 등 자격을 추가합니다.
- 윤리위원회 위원이 임명 기관에 의해 해임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원회의 공석을 채우는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늘립니다.
- 윤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벌금을 \$5,000에서 \$15,000로 늘리고, 이 벌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조정합니다.
- 시 헌장 또는 시 조례의 조항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집행이사관이 지명한 사람이 판단하도록 허용합니다.
- 시의회가 윤리위원회의 정책 제안에 대해 180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 시 검사, 시 검사 사무실, 시 검사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안이나 특정 조사 및 집행 사안을 포함하여 제한된 상황에서 윤리위원회가 외부 법률 고문을 고용하도록 허용합니다.
- 특별 검사에 대한 위원회의 예산을 \$250,000에서 \$500,000로 늘리고, 시 검사가 이해 상충을 선언할 때 위원회가 승인된 명단에서 특별 검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수정합니다.
- 2025~26 회계연도부터 매년 최소 \$700만을 윤리위원회의 연간 운영 예산으로 책정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매년 시의 전년도 세입에 따라 이 책정 예산을 조정합니다.
- 지출이 위원회 예산 범위 내에 있으며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시청이나 직원의 사전 승인 없이 윤리위원회의 지출을 승인합니다.
- 윤리위원회가 위원회 집행이사관의 급여를 정하고 급여 범위를 다른 시 총괄 관리자의 급여 범위와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윤리위원회의 직원을 공무원 고용 조항에서 면제합니다.
- 윤리위원회가 승인된 예산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대한 고용 동결 조치를 면제합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정적 영향 보고서 **MATTHEW W. SZABO, 시 행정관 작성**

이 법안은 임명된 특별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500,000를 포함하여 시 윤리위원회의 최소 연간 예산을 \$7,000,000로 정하고, 위원회의 지출 결정 및 고용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특정 상황에서 외부 고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재 예산에서 2025~26년에 \$7,000,000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인상액은 \$380,000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예산 금액을 전년도 시 세입의 변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회계연도에 조정을 하면 안 될 긴급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인상액을 상쇄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은 위반행위로 인한 벌금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입입니다. 향후 몇 년간 부과되고 징수될 수 있는 벌금의 횟수와 금액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헌장수정안 제ER호에 대한 찬성론

시 정부의 진정한 윤리 개혁을 위해 헌장수정안 제ER호에 투표하세요. 이 수정안은 시 윤리위원회에 윤리 위반을 조사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규칙 위반자에 대한 잠재적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시 공무원이 부패 행위로 국민을 배신하고 명예를 잃었으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다수의 시 직원과 공직자는 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윤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를 축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효과적인 시 정부가 되려면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Los Angeles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막는 일을 시 윤리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헌장수정안 제ER호는 윤리위원회 역사상 최초의 대대적인 윤리 개혁 조치입니다. 윤리 위반에 대해 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장수정안 제ER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윤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기존 처벌을 세 배로 강화합니다.
- 시와 거래하거나 시의 조치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윤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선출직 공무원이 친척, 선거 컨설턴트 또는 주요 선거 기부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임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시의회가 180일 이내에 모든 위원회 권고안을 검토하도록 강제합니다.
- 특정 지출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 없이 윤리위원회가 통제할 수 있는 최소 연간 예산을 설정하고, 윤리위원회가 자체 법률 고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윤리 집행을 강화하고 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세요!

헌장수정안 제ER호 찬성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헌장수정안 제ER호에 대한 찬성론 서명자

PAUL KREKORIAN
제2 선거구 시의원
Los Angeles 시

이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수정안 제ER호에 찬성하는 반박론

30여 년 전, Los Angeles 시민들은 공무원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의 윤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투표했습니다. 이제 30년 만에 처음으로 윤리위원회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장수정안 제ER호는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해상충으로부터 윤리위원회를 차단하며, 시 윤리 규정을 위반하고 공공의 신뢰를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장수정안 제ER호는 윤리 위반에 대한 벌금을 3배로 높이고, 위원회에 독립 예산을 부여하여 모든 지출을 시의회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며, 위원회가 자체 변호사를 고용하여 윤리 위반을 조사하고 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 윤리위원회를 강화하여 정부를 개선하세요.

시청 개혁에 찬성으로 투표하세요. 현장수정안 제ER호 찬성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수정안 제ER호에 찬성하는 반박론에 서명하는 사람

PAUL KREKORIAN
제2 선거구 시의원
Los Angeles 시

NITHYA RAMAN
제4 선거구 시의원
Los Angeles 시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헌장 또는 기존 헌장 절에 추가되는 새 조항이나 문구는 밑줄로 표시되고, 헌장 또는 기존 헌장 절에서 삭제되는 단어는 취소선으로 표시됩니다.

헌장 개정 ER

섹션 1.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700의 부속조항 (b)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b) **임명.** 시장, 시 검사, 시 감사관, 시의회 의장 및 시의회 임시 의장은 각각 한 명의 위원을 위원회에 임명합니다. 모든 임명은 시의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임명권자는 자신의 친척이나 다른 선출직 시 공직자, 선거 컨설턴트 또는 고액 기부자의 친척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친척에는 배우자, 동거인,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인척이 포함되며, 선거 컨설턴트에는 최근 12개월 동안 정치 캠페인 또는 시 공직자가 관리하는 위원회에 보수를 받고 자문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이 포함되며, 고액 기부자에는 최근 12개월 동안 정치개혁법에 따라 고액 기부자 자격을 갖춘 개인이 포함됩니다.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섹션 503에 규정된 자격에 따라 임무를 수행합니다.

섹션 2.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700의 부속조항 (d)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d) **자격 요건.** 위원회의 각 위원은 시의 등록된 유권자여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 또는 집행이사관은 위원회가 위원 혹은 집행이사관의 임기 중에 결정을 내린 시 공직 또는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교육위원회 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공직 선거가 위원 혹은 집행이사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나서 최소 2년 후에 실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원 또는 집행이사관은 자신의 임기 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게 금지됩니다.

- (1) 다른 공직을 맡는 행위
- (2) 시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기여하는 행위
- (3)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 (4) 선출직에 출마하는 시 공무원 또는 Los Angeles 시 통합 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에 참여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 (5) Los Angeles 시에 로비스트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고용되는 행위
- (6) Los Angeles 시와 계약하거나 시로부터 재정적 승인을 구하는 사업체(상장 기업의 주식 제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계약에 따라 개인적으로 시에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7) 선거 캠페인 또는 시 공직자가 관리하는 위원회에 보수를 받는 자문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8) 개인이 정치개혁법에 규정된 고액 기부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위원회에 기부하는 행위

섹션 3.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700의 부속조항 (e) 및 (f)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e) **해임.** 위원회 위원이 해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고 답변 기회를 부여받은 뒤에도 중대한 직무 태만, 중대한 위법 행위, 권한과 의무에 대한 무능력을 보이거나 본조를 위반한 경우, 위원의 임명권자 사장이 시의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해임하거나 시의회의 2/3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f) **공석.** 위원회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은 9030일 이내에 전임자를 임명했던 동일한 임명권자가 실행해야 합니다.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은 임명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공석으로 인해 나머지 위원이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섹션 4.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701의 부속조항 (a) 및 (b)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섹션 701. 집행이사관, 위원회 직원, 권한의 위임.

(a) 위원회는 집행이사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지며, 집행이사관은 위원회 정책 및 규정과 관련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집행이사관은 위원회의 의지에 따라 근무하며, 공무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집행이사관의 자산과 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이해관계도 없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유사한 직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시의 다른 총책임자와 일치하는 집행이사관 급여 범위를 정하고, 매년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사관 급여를 정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집행이사관 급여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에서 정하며, 해당 직책에 부여된 책임과 권한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거쳐 행정 및 연구 서비스 국장이 제출한 추천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집행이사관은 10년을 초과하여 해당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b) 집행이사관은 위원회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지며, 직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위원회의 비사무직 인력은 집행이사관의 의지에 따라 근무하며, 공무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이해관계도 없어야 합니다.

섹션5. 섹션 703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규칙, 규정 및 제안

섹션 6.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703의 부속조항 (c)가 다음과 같이 추가됩니다.

(c) 위원회가 관할 구역 내 정책 제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180일 이내에 시의회는 해당 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시의회가 180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시 사무국은 다음 시의회 정기 회의에서 제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섹션 7.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706의 부속조항 (b)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b) **가능한 원인의 발견; 행정 집행.** 위원회 집행이사관 또는 집행이사관이 지정한 자가 선거 자금 조달, 로비, 이해 상충 또는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헌장이나 시 조례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이사관 또는 집행이사관이 지정한 자는 행정 집행 고발장을 발부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집행이사관 또는 집행이사관이 지정한 자는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 위원회 집행이사관 또는 집행이사관이 지정한 자가 위반을 고려하기 최소 21일 전에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에게 위반 혐의에 대한 고지를 송달하거나 등기 우편(반송 영수증 요청)으로 발송하고, 증거 요약본을 제공하고, 해당 당사자가 위반을 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고려하기 위해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직접 출석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고지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 등기 우편 영수증에 서명한 날짜, 또는 등기 우편 영수증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반송한 날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당한 이유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위반 혐의자가 위원회에 절차 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섹션 8.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706의 부속조항 (c) 및 (d)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c) **행정 심리, 명령 및 벌금.** 고발장이 발부되어 송달된 후, 위원회는 공개 증거 심리를 열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원회가 심리에 제시된 상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위반 행위의 중단 및 중지

(2) 법률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나 정보의 제출

(3) 각 위반에 대해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는, 최대 오천일만 오천 달러 (\$15,0005.000), 또는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기부, 지출, 제공, 또는 수령한 금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을 Los Angeles 시 일반 기금에 과태료로 납부 위원회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명시한 선언문을 공표합니다.

(d) **기관 간 이관.** 집행이사관 또는 집행이사관이 지정한 자가 상당한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안은 집행을 위해 다른 적절한 기관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

섹션 9.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708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섹션 708. 법률 서비스.

시 검사는 위원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섹션 275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자체 법률 고문을 유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본 섹션에



설명된 두 가지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체 법률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섹션 275에도 불구하고, 첫째, 시 검사와는 별도로 위원회는 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시 검사의자산의 사무실 또는 시 검사의자산의 선거 캠페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직원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는 특정 조사 또는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섹션 706에 따른 위원회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체적인 법률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상황에서, 위원회 및 시 검사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위원회가 법률 고문으로 선정한 로펌 또는 변호인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섹션 10.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710의 부속조항 (a), (b) 및 (c)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a) 275절에도 불구하고, 시 검사가 시 검사자산의직무에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어 Los Angeles 시 헌장, 시 조례나 규정, 또는 선거 자금 조달, 로비, 이해 상충, 정부 윤리와 관련된 법령의 위반 혐의를 조사하거나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 검사는 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4/5 투표로 조사를 수행할 특별 검사를 임명하기로 결정할요청할수 있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위반 혐의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또는 행정 처분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특별 검사를 임명할 수 없습니다.

(b) 위원회의 특별 검사 임명 요청은 매 홀수 연도 초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특별 검사 명단위원회에서 선정한 3명의 퇴직 판사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3명의 판사 위원은특별 검사는 임명 즉시, 국민의 이름으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c) 각 회계연도에 시 윤리위원회의 예산에는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특별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출로 총 오십만아홉오만 달러(\$500,000250,000)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금이 회계연도 종료 전에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시의회에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 검사를 위해 지출되거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금액은 시의회의 승인 없이 오십만아홉오만 달러(\$500,000 25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는 위원회로부터 추가 자금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를 수락, 거부 또는 수정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해당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요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장은 요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위원회의 조치 또는 무조치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장이 시의회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시의회는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2/3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섹션 11.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711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섹션 711. 책정 및 지출.

(a) 2025~2026년 회계연도 예산부터 시의회는 위원회의 연간 운영 예산으로 각 회계연도마다 최소 칠백만 달러(\$7,000,000)를 책정해야 합니다. 예산 금액은 전년도 Los Angeles 시의 수입 변동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조정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해당 회계연도에 조정을 하지 않아야 할 긴급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년도 Los Angeles 시의 수입 변동에 따른 위원회 연간 예산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회계연도 최소 1년 전에 위원회에 자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b) 위원회의 지출은 위원회가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지출이 위원회 예산 범위 내에 있다면 시 사무실 또는 직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지출과 관련된 Los Angeles 시의 해당 요건, 절차 및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c) 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가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고용 동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섹션 12.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1001의 부속조항 (a)(13)은 윤리위원회의 모든 직책이 공무원의 면책 대상임을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3) 시 윤리위원회의 집행이사관 및 모든 비사무직 인력.

섹션 13. 이 헌장 개정안의 어떤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이 관할 법원이나 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나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이 조의 나머지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이 조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는 위헌이거나 무효로 판정된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이 없었다면 이 헌장 개정안의 모든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을 통과시켰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경찰, 공항, 항만,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에 고용된 보안관을 Los Angeles시 직원 은퇴 시스템에서 Los Angeles시 소방 및 경찰 연금 제도로 이전하고, 과거 이전에 대해 시가 특정 공원 및 경찰국 직원에 대한 환불을 포함한 관련 비용을 지출하도록 시 현장을 개정해야 합니까?

공정한 요약**SHARON M. TSO, 수석 입법 분석관 작성**

Los Angeles 시 현장(이하 현장)은 시의 경찰, 공항, 항만,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에서 보안관으로 선서하여 보안관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시 직원이 Los Angeles 시 직원 은퇴 시스템의 가입자(이하 LACERS 보안관이라 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현장수정안은 해당되는, 선서한 보안관 직원 그룹이 LACERS로부터 Los Angeles 소방 및 경찰 연금플랜(LAFPP)으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시의 선서한 다른 보안관 직원 대다수는 LAFPP 가입자입니다. LAFPP 6단계는 해당되는 LAFPP 가입자를 위한 연금플랜입니다.

이 법안은 현장을 수정하여 시의회가 2025년 1월 12일 현재 유효한 고용된 상태인 LACERS 보안관이 LAFPP로 이전하기 위한 한 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전 현장수정안에 따라 이전에 LAFPP로 이전하겠다고 선택하지 않은 LACERS 보안관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시와 Los Angeles 공항 보안관 협회가 대표하는 교섭 단체 간에 체결된 합의서와 일치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LACERS 가입자인 시 경찰 및 항만부의 선서한 직원을 포함하기 위해 시의 임직원관계위원회가 취한 조치와도 일치합니다. 제안된 법안은 현장 제3부 11조의 몇 섹션을 수정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시의회가 시행 조례를 채택하고 Los Angeles 행정법에 명시된 LACERS 플랜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승인합니다.

법안의 4가지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의회가 2025년 1월 12일 현재 유효하게 고용된 상태인 LACERS 보안관이 위원 자격을 취득하는 즉시 LACERS에서 LAFPP의 6단계로 모든 이전 근무 연도와 기여금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여 LACERS에서 LAFPP의 6단계로 위원 자격을 이전하는 한 번의 취소 불가능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도록 승인.
- 시의회가, 특정 6단계 가입자가 시에 남아 있는 서비스와 퇴직 기여금을 LACERS로부터 LAFPP로 이전하는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승인.



- Los Angeles 행정법에 따라 6단계 가입자가 시 서비스나 6단계 건강 혜택의 일부를 구매하기 위해 이전에 지출한 모든 금액에 대해 LAFPP가 세금 규정을 준수하여 환급하도록 요구.
- LACERS 보안관이 LACERS로부터 LAFPP 6단계로 이전하는 데 따른 모든 비용을 시에서 지급하고, 이 현장수정안에 따라 채택된 관련 조례에 따라 6단계 가입자에게 환불되는 금액의 전 비용으로 LAFPP에게 보전을 하도록 요구. 시의 일반 기금, 공항, 항만,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는 연금플랜 가입과 이전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정적 영향 보고서 **MATTHEW W. SZABO, 시 행정관 작성**

이 법안은 현재 경찰, 공항, 항만,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에 고용된 약 460명의 보안관과 공원 관리원이 Los Angeles 시 직원 은퇴 시스템(LACERS)의 연금플랜 가입과 서비스를 Los Angeles 소방 및 경찰 연금플랜(LAFPP)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에 따라 시는 이전과 관련되는 모든 일회성 및 연간 비용을 LAFPP에 지불하고, 이전의 선택적 이전에서 시 서비스를 구매한 다른 가입자에게 환불하는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예상 일회성 비용은 \$109,500,000이며, 이 중 \$106,000,000는 이전 비용, \$3,500,000는 환불 비용입니다. 연간 예상 비용은 \$6,300,000이며, 매년 변경되는 급여에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시의 일반 기금, 공항 세입 기금, 항만 세입 기금은 각각 영향을 받는 가입자의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일반 기금은 일회성 지불에 대해서는 약 \$23,000,000를, 연간으로는 \$1,000,000를 지불하며, 이는 매년 변경되는 급여에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현장수정안 제FF호에 대한 찬성론

현장수정안 제 FF호 찬성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제FF호는 시에서 고용된 모든 경찰관에게 근무 부서와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 플랜에 가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간단한 법안입니다. 해당하는 모든 경찰관은 동일한 교육 및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유사한 위험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들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Los Angeles 경찰서(LAPD)에 고용된 경찰관은 LA 소방 및 경찰 연금 플랜(LAFPP)의 적용을 받으며, 신입 항만 경찰관(2004년 이후), 공항 경찰관(2018년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공항, 항만,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부서와 LAPD에 고용된 일부 경찰관은 LA 민간인 직원 퇴직 시스템(LACERS)이 적용됩니다. LACERS가 적용되는 경찰관 중 일부는 향상된 공공 안전 연금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주 법률과 시 현장이 여러모로 개정된 결과입니다.

일부 경찰관에게 서로 다른 연금 플랜과 혜택이 적용되어 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FF호는 시의 법 집행기관 간 정보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우수한 인재가 다른 부서의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사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범주를 단순화하여 시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재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항만 경찰 및 공항 경찰 모두 이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FF호는 공공 안전과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어떤 시 기관도 그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현장수정안 제FF호에 대한 찬성론 서명자

BOB BLUMENFIELD
Los Angeles 시의원

KAREN BASS
Los Angeles 시장

JOHN S. LEE
Los Angeles 시의원

TRACI PARK
Los Angeles 시의원

PAUL KREKORIAN
Los Angeles 시의원

ANTONIO VILLARAIGOSA
Los Angeles 전임 시장

MARSHALL E. MCCLAIN
의장
Los Angeles 공항 치안 책임자 대리

JOE LOSORELLI
Los Angeles 최고 공원 관리자

이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또는 기존 현장 절에 추가되는 새 조항이나 문구는 밑줄로 표시되고, 현장 또는 기존 현장 절에서 삭제되는 단어는 취소선으로 표시됩니다.

현장 개정 FF

섹션 1. Los Angeles 시 현장 섹션 1202의 부속조항 (e)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e) **부서 구성원:** 선서한 소방서 또는 경찰서의 구성원으로서, 각 등급에 정의된 용어에 따름. 이 용어에는 현장 섹션 1703 또는 1709에 따라 승인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Los Angeles 시 직원 은퇴 시스템에 남아 있는 선서한 경찰서 구성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용어에는 플랜 등급 조항에 따라 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선서한 항만부 구성원은 포함되지만, 2006년 1월 8일 이전에 임명되었고 현장 섹션 1709에서 승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Los Angeles 시 직원 은퇴 시스템에 남아 있는, 선서한 항만부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용어에는 플랜 등급 조항에 따라 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공항부의 부서와 선서한 구성원은 포함되지만 2018년 1월 7일 이전에 임명되었고 현장 섹션 1704 또는 1709에서 승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Los Angeles 시 직원 은퇴 시스템에 남아 있는 공항부의 부서와 선서한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용어에는 현장 섹션 1709에 따라 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의 선서한 구성원은 포함되지만, 현장 섹션 1709에서 승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Los Angeles 시 직원 은퇴 시스템에 남아 있는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의 선서한 구성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섹션 2. Los Angeles 시 현장 섹션 1700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섹션 1700. 6급 구성원.

(a) **임명된 서장.** 2011년 7월 1일 이후 해당 직책에 임명된 경찰서장, 소방서장, 항만청장(서장)과 2018년 1월 7일 이후에 해당 직책에 임명되었으면서 임명 당시에 플랜 가입자나 퇴직 플랜 가입자가 아닌 공항 경찰청장(서장)은 임명 시점에 6급 플랜 가입자가 됩니다. 임명 후 7일 이내에 소방 및 경찰 연금부에 서면으로 6급 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Los Angeles 시 직원 은퇴 시스템(Los Angeles City Employees' Retirement System, LACERS)에 가입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시 6급 플랜에 가입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직책에 임명되었고 임명 당일에 이미 부서 구성원이었던 서장은 서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속했던 등급이 계속 유지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서장 직책에 임명된 퇴직 플랜 가입자는 임명 시점에 6급 플랜에 가입되지 않고 LACERS에 가입하게 되며, 퇴직 플랜 가입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재직 중 퇴직금 정산에 관한 연방 세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혜택을 계속 받지만 서장으로 고용됨으로써 플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적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명 당일에 이미 플랜에 가입되어 있던 공원 경비소장은 소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속해 있던 등급이 계속 유지되지만, 임명 당시 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공원 경비소장은 LACERS에 새로 가입되거나 기존 가입이 계속 유지됩니다. 임명 당시 퇴직 플랜에 가입되어 있던 공원 경비소장은 LACERS에 가입되며, 퇴직 플랜에 가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재직 중 퇴직금 정산에 관한 연방 세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혜택을 계속 받지만 공원 경비소장으로 고용됨으로써 플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적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b) **임명된 구성원.** 서장을 제외하고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부서 구성원으로 임명된 각 직원은 (1) 경찰 또는 소방 학교 또는 소방관 또는 경찰관이 되기 위한 기본 교육을 제공하고 Los Angeles 시에서 유지하는 그에 준하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후 졸업하거나, (2) 항만부에서 요구하는 학교 교육을 졸업하면 6급 플랜에 가입됩니다. 6급 플랜에 가입된 구성원은 위원회에서 채택한 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 기간에 대한 근속 연수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c) **6급 플랜 가입자가 되지 않는 사람.** 이 섹션의 부속조항 (b), (f), (g) 및 (h)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다른 급의 플랜에 가입된 사람이 근무를 중단하지 않고 6급 플랜 가입 자격이 부여되는 다른 직책에 임명된 경우, 이 새로운 임명으로 인해 6급 플랜에 가입되는 대신 새로운 임명 전에 속해 있던 등급에 가입된 채로 남게 됩니다.

(2) 2006년 1월 8일 이전에 항만부의 선서 직책에 임명되었고, 5급 또는 6급으로 전직을 선택하지 않고 LACERS에 가입된 채로 남아 있는 사람이 이후에 항만부 근무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항만부의 선서 직책에 임명되어 6급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임명 시 6급에 가입되지 않고 LACERS에 가입된 채로 남게 됩니다.

(3) 다른 등급에서 장애 연금을 받고 은퇴한 후, 현역에 복귀한 플랜 가입자는 6급에 가입되지 않고 은퇴할 당시의 등급에 가입된 채로 복귀됩니다.

(4) 다른 등급에서 서비스 연금을 받고 은퇴한 후, 부서 구성원으로 현역에 복귀한 플랜 가입자는 6급에 가입되지 않고 은퇴할 당시의 등급에 가입된 채로 복귀됩니다.

(5) 2018년 1월 7일 이후에 공항부부서 또는 소방서의 선서 직책에 임명된 사람 중, 6급으로 전직을 선택하지 않고 LACERS에 가입된 채로 남아 있는 사람이 이후에 공항부의부서와 근무를 중단하지 않고 공항부의부서와 선서 직책 또는 6급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소방서 선서 직책에 임명되는 경우, 임명 시 6급에 가입되지 않고 LACERS에 가입된 채로 남게 됩니다.



(6)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에서 선서 직책에 임명되고, 6급으로 전직을 선택하지 않고 LACERS에 가입된 채로 남아 있는 사람.

(7) 2025년 1월 12일 이후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에서 선서 직책에 임명되는 사람.

(d) **이전 구성원.** 사임 또는 해고로 인해 가입 자격을 상실한 모든 등급의 이전 가입자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부서 구성원으로 다시 임명된 경우, 해당 가입자는 6급에 가입됩니다. 이전 근속 기간에 대한 납입금을 환불받지 못한 경우, 해당 가입자의 서비스 크레딧 자격에 대해서 이 6등급에 포함된 "근속 기간"의 정의를 따르며 이전 근속 기간에 대해 납입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가입자가 이전 등급에서 납입금을 환불받을 권리가 없었던 경우, 이후 플랜 가입을 해지하면 이전 등급의 조항에 따라 과거에 납부했던 납입금을 환불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퇴직으로 인해 납입금을 환불받은 경우,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근속 연수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전에 환급받은 납입금을 다시 납부하기로 선택하고 소방 및 경찰 연금 플랜에 납부한 금액과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해당 플랜 해지일 및 플랜 가입자로 가입한 날짜 사이에 발생했을 이자를 더해 계산된 금액을 이자와 함께 납부해야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해당 가입자가 재납부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이 6등급의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근속 연수라는 용어에는 섹션 1702의 부속조항(q)(r) 및 (r)(s)에 포함된 정의에도 불구하고 재임명 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 **6등급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시의회의 권한.** 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다른 등급의 플랜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6등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동이 보험 계리의 관점에서 플랜 납입 비용에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속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는 이 현장 섹션 1618(b)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하되, 시의회는 제안된 변경 비용에 대해 등록된 보험계리사로부터 서면으로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f) **공향부의 부서의 구성원.** 이 섹션의 부속조항 (b)에 설명된 부서 구성원 외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6급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1) **2018년 1월 7일 이후에 임명된 사람.** 2018년 1월 7일 이후에 임명된 각 사람은 섹션 1702(d)에 정의된 대로 공향부의 부서의 구성원으로서, 공향(부)의 부서의 요구하는 학교 교육을 이수한 후 졸업하는 즉시 6급 플랜에 가입됩니다. 6급 플랜에 가입한 구성원은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학교 교육 기간에 대한 근속 연수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지만, 파트타임, 계절성 및 임시직 직원을 위한 연금 저축 플랜에 가입되어 있었던 학교 교육 기간에 대해서만 구매 자격이 부여됩니다. 2018년 1월 7일 이후에 임명된 공향 경찰청장은 섹션 1700(a)에 명시된 선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명 시점에 서면으로 6급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영구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2018년 1월 7일 이전에 임명된 사람.** 2018년 1월 7일 이전에 섹션 1702(d)에 정의된 대로 공항부의부서와구성원으로 임명되어, 해당 날짜에 섹션 1702(d)에 정의된 대로 공항(부의)부서와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아래에 규정된 약관 및 시의회에서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한 조례에 따라 서면을 통해 LACERS에 가입하는 대신 6급 플랜에 가입할 것을 영구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공항(부의)부서와에서 요구하는 학교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는 누구도 6급 플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선택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LACERS 가입자로 계속 유지되며, 이후 공항(부의)부서와 근무를 중단하지 않고 공항(부의)부서와 선서 직책 또는 본래라면 6등급 플랜에 가입되어야 하는 소방서 선서 직책에 임명되는 경우에도 LACERS에 가입된 채로 유지됩니다.

(g) **항만부 구성원 및 공공 안전 치안부의 이전 구성원.** 이 섹션의 부속조항 (b)에 설명된 부서 구성원 외에도 항만부의 선서한 직원 및 공공 안전 치안부에서 계속 고용되어 있다가 경찰서의 선서한 직원이 된 사람은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채택한 조례에 따라 서면을 통해 LACERS에 가입하는 대신 6급 플랜에 가입할 것을 영구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선택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LACERS 가입자로 유지되며, 이후 부서 근무를 중단하지 않고 원래라면 6등급 플랜에 가입되어야 하는 다른 직책에 임명되는 경우에도 LACERS에 가입된 채로 남게 됩니다.

(h)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 구성원.** 이 섹션의 (b)에 설명된 부서 구성원 외에도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의 선서한 직원은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채택한 조례에 따라 서면을 통해 LACERS에 가입하는 대신 6급 플랜에 가입할 것을 영구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선택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LACERS 가입자로 유지되며, 이후 부서 근무를 중단하지 않고 원래라면 6등급 플랜에 가입되어야 하는 다른 직책에 임명되는 경우에도 LACERS에 가입된 채로 남게 됩니다.

(i) **아부속조항(호)(f)(2), (g) 또는 (h)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은**서비스 구매, 납입, 선택 비용에 관한 모든 관련 요건을 포함하여 섹션 1703, 1704 또는 1709에 따라 승인된 대로 시의회가 선택을 관리하기 위해 채택한 조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j) **6등급 장애 연금 및 6등급 유족 연금에 관한 섹션 1706 및 1708의 목적상,** 부서 구성원의 산재 보상 수령 효과와 관련된 섹션 1212에서 이 섹션의 부속조항호 (f)(2), (g) 또는 (h), 섹션들 1703, 1704 또는 1709 및 그러한 섹션들1704에서 승인한 대로 시의회가 채택한 조례에 따라 이동하는 6급 플랜 가입자는 고용 당시 실제 6급 플랜 가입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섹션들 1703, 1704 또는 1709 및 그러한 섹션들에서 1704 승인된 대로 시의회가 채택한 조례들에 따라 근무 연수 크레딧을 받는 모든 고용 기간 동안 섹션 1202(e)에 정의된 부서 가입자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이 섹션에 따라 고용 당시 해당 사람을 부서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6등급 조항에 따라 부여되는 장애 또는 유족 연금의 금액을 섹션 1212에 규정된 대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섹션 3. Los Angeles 시 현장 섹션 1702의 부속조항 (d) 및 (q)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고, 새로운 부속조항 (e)가 추가되었으며, 부속조항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는 각각 부속조항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로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섹션 1702. 정의.

3부의 소방 및 경찰 연금 플랜 총칙에 정의된 단어 및 문구 외에, 이 6등급 규정에서 문맥상 다른 의미가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단어나 문구는 이 섹션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습니다.

(a) **소방서 구성원.** 소방서 구성원은 소방서장, 그리고 공무원 규칙 및 규정이나 현장 조항, 또는 그 두 가지에 모두 의거하여 Los Angeles 시의 소방관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원래의 긴급 또는 임시 임명이 아니라 수습 기간이 필요한 정규적이고 영구적인 임명을 위해 적법하게 정기적으로 소방서에 임명된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람은 해당 부서 구성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급여 또는 부서 조례에 명시된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 사직이나 해고, 기타 사유로 인해 이러한 지위가 해제될 때까지만 해당 부서의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b) **경찰서의 구성원.** 경찰서 구성원은 경찰서장, 그리고 공무원 규칙 및 규정이나 현장 조항, 또는 그 두 가지에 모두 의거하여 Los Angeles 시의 경찰관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원래의 긴급 또는 임시 임명이 아니라 수습 기간이 필요한 정규적이고 영구적인 임명을 위해 적법하게 정기적으로 경찰서에 임명되고 선서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람은 해당 부서 구성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급여 또는 부서 조례에 명시된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 사직이나 해고, 기타 사유로 인해 이러한 지위가 해제될 때까지만 해당 부서의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c) **항만부 구성원.** 항만부 구성원은 항만청장, 그리고 공무원 규칙 및 규정이나 현장 조항, 또는 그 두 가지에 모두 의거하여 항만부에 대한 경찰 의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원래의 긴급 또는 임시 임명이 아니라 수습 기간이 필요한 정규적이고 영구적인 임명을 위해 적법하게 정기적으로 항만부에 임명되고 형법 섹션 830.1에 따라 선서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람은 해당 부서 구성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급여 또는 부서 조례에 명시된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 사직이나 해고, 기타 사유로 인해 이러한 지위가 해제될 때까지만 해당 부서의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d) **공항본부서의 구성원.** 공항본부서 구성원은 공항 경찰서장, 공항 경찰서 부서장, 공항 안전 책임자, 그리고 공무원 규칙 및 규정이나 현장 조항, 또는 그 두 가지에 모두 의거하여 공항본부서의 경찰 또는 소방 의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원래의 긴급 또는 임시 임명이 아니라 수습 기간이 필요한 정규적이고 영구적인 임명을 위해 적법하게



정기적으로 향만부에 임명되고 형법 섹션 830.1에 따라 선서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람은 해당 부서 구성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급여 또는 부서 조례에 명시된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 사직이나 해고, 기타 사유로 인해 이러한 지위가 해제될 때까지만 해당 부서의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e)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 구성원.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 구성원은 공원 경비소장,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에 대한 경찰 또는 소방 의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원래의 긴급 또는 임시 임명이 아니라 수습 기간이 필요한 정규적이고 영구적인 임명을 위해 적법하게 정기적으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에 임명되고 형법 섹션 830.31에 따라 선서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람은 해당 부서 구성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급여 또는 부서 조례에 명시된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 사직이나 해고, 기타 사유로 인해 이러한 지위가 해제될 때까지만 해당 부서의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e)(f) **6급 플랜 구성원.** 6급 플랜 가입자는 부서 구성원으로서 6급 연금 권리 및 혜택이 적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6등급에 적용되는 조항에서는 용어가 사용되는 문맥에서 다른 등급의 구성원을 지칭하거나 포함하는 용법이 명시되지 않는 한, 플랜 가입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6등급 플랜 가입자를 의미합니다. 6급 플랜 가입자로서의 지위는 섹션 1700의 조항에 따라 제한됩니다.

(f)(g) **적격 생존 배우자.** 적격 생존 배우자란 6급 플랜 가입자와 결혼한 사람을 의미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급 플랜 가입자로 있는 동안 근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망일 이전 최소 1년 동안 결혼 상태였을 것

(2) 6급 플랜 가입자의 근무와 관련된 사망일에 결혼 상태일 것

(3) 6급 플랜 가입자의 은퇴가 근무 관련 연금 또는 근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 연금에 적용되는 날짜 이전에 최소한 1년 동안 결혼 상태였을 것

(4) 6급 플랜 가입자의 퇴직이 근무와 관련된 장애 연금에 적용되는 날짜에 결혼 상태일 것

(5) 6급 플랜 가입자의 군 휴직 중 근무 관련 사망이 아닌 날짜에 결혼 상태일 것

또한, 구성원의 사망일에 이 사람이 해당 구성원의 (주에 등록되었거나 플랜에 신고된) 동거인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주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다른 관할권에서 결혼 이외의 법적 결합이 유효하게 형성되어 주에 등록된 동거 관계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같은 성별의 두 사람은 본 플랜에서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결혼



날짜에 대한 언급은 다른 관할권에서의 법적 결합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g)(h) **적격 생존 동거 파트너.** 적격 생존 동거 파트너는 Los Angeles 행정법 섹션 4.2204 에 규정된 대로 6등급 플랜 가입자와의 동거 파트너 신고서를 소방 및 경찰 연금 위원회에 제출했거나 6등급 플랜 가입자와의 동거 파트너 관계가 주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급 플랜 가입자의 근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망일 이전 최소 1년 동안 등록 상태였을 것

(2) 6급 플랜 가입자의 근무와 관련된 사망일에 등록 상태일 것

(3) 6급 플랜 가입자의 은퇴가 근무 관련 연금 또는 근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 연금에 적용되는 날짜 이전 최소 1년 동안 등록 상태였을 것

(4) 6급 플랜 가입자의 퇴직이 근무와 관련된 장애 연금에 적용되는 날짜에 등록 상태일 것

(5) 6급 플랜 가입자의 군 휴직 중 근무 관련 사망이 아닌 날짜에 등록 상태일 것

또한, 구성원의 사망일에 이 사람이 해당 구성원의 (주에 등록되었거나 플랜에 신고된) 동거인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h)(i) **적격 유족.** 적격 유족이란 적격 생존 배우자 또는 적격 생존 동거 파트너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h)(j) **자녀.** 미성년 자녀란 사망한 6급 플랜 가입자 또는 은퇴한 6급 플랜 가입자의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해당 사람이 만 18세가 되거나 결혼을 한 때까지(둘 중 이른 시점 적용) 미성년 자녀로 간주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풀타임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결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수급 자격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자녀가 만 22세가 될 때까지 이 등급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h)(k) **부양 자녀.** 부양 자녀란 사망한 6급 플랜 가입자 또는 은퇴 후 사망한 6급 플랜 가입자의 자녀로서, 해당 가입자의 사망일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원인이나 이유로든 만 21세 미만인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해당 사람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장애가 없어질 때까지만 부양 자녀로 간주됩니다. 22세 이전에 장애가 중단되는 경우, 부속조항 (h)(i)에 명시된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h)(l) **부양 부모.** 부양 부모란 사망한 6급 플랜 가입자 또는 은퇴 후 사망한 6급 플랜 가입자의 부모로서, 사망한 가입자가 사망 직전 1년 이상 해당 부양 부모의



필수 생활비를 1/2 이상 부담하였고 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그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해당 사람은 필수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을 때까지만 부양 부모로 간주됩니다.

(h)(m) **근속 수당.** 근속 수당이란 근속 기간에 따라 조례 또는 양해각서에 의거해 제공되는 추가적인 총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h)(n) **특별 수당.** 특별 수당이란 위험 업무 이외의 특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되어 조례 또는 양해각서에 의거해 지급되는 추가적인 총 월 급여를 의미합니다.

(h)(o) **위험 수당.** 위험 수당이란 헬기 임무, 이륜 오토바이 임무 또는 기타 위험한 임무 수행을 이유로 조례 또는 양해각서에 의거해 제공되는 추가적인 총 월 급여를 의미합니다.

(h)(p) **직무 수당.** 직무 수당이란 6급 플랜 가입자의 정규 직급 내에서 가장 낮은 직급보다 높은 직급, 직위, 등급, 코드 또는 기타 직책에서 특수 업무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되어 조례 또는 양해각서에 의거해 제공되는 추가적인 총 월 급여를 의미합니다.

(h)(q) **연도.** 연도는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속 연수를 결정하기 위해 부분 연도를 합산할 경우에는 365일을 의미합니다.

(h)(r) **근속 연수.** 근속 연수란 플랜 가입자가 6급 플랜 가입자가 되기 전 또는 후에 소방서 구성원, 경찰서 구성원, 항만부 구성원, 또는 공항본부서의 직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간 및 이 6급의 섹션 1700 에 포함된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만 포함됩니다.

(1) 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령했거나 수령해야 합니다.

(2) 이 6등급에 따라 다시 퇴직하거나 은퇴하기 전 1년 이상 현역으로 복직하여 이 플랜에서 근무 관련 장애 연금 또는 근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 연금을 수령했거나 수령해야 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복직 이전에 본인이 입었거나 앓았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이에 영향을 미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직했던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직된 플랜 가입자가 복직하고 나서 1년 간 근속하면 복직 후 근속 기간이 장애 연금을 수령한 기간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나, 복직 후 3년 간 근속하면 복직된 플랜 가입자는 장애 연금을 수령한 전체 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랜 가입자가 근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 연금을 받았던 기간은 위원회가 채택할 규칙에 따라 이 6급의 섹션 1714 에 규정된 대로 납입한 경우에만 가입자의 근속 연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일반 법률 또는 시 조례에 따라 군 복무 또는 군 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4)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반 법률에 규정된 일시적 장애에 대한 산재 보상 혜택을 받았거나 받게 됩니다. 단, 해당 기간은 플랜 가입자가 위원회 규칙에 규정된 방식으로 소방 및 경찰 연금 플랜에 납부한 경우에만 플랜 가입자의 근속 연수에 포함됩니다.

(5) 시 조례 또는 해당 양해각서에 따라 근무 중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받게 됩니다.

(6) 퇴직 자격 수급을 갖추지 못한 채 소방 및 경찰 연금 제도(2, 3, 4, 5급)의 가입자로 근무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등급의 플랜 가입자였던 사람이 퇴직 또는 해고로 인해 플랜 가입 자격을 상실했다가 이후에 6급 플랜 가입자가 된 경우, 위원회가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이전에 인출한 적립금을 이자와 함께 재적립한 경우에만 이전 가입 기간의 근속 연수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급 플랜 가입자의 적격 유족은 플랜 가입자가 선택한 근속 기간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f)(s) 부분 근속 기간. 부분 근속 기간이란 이 섹션의 부속조항 (p)(q)에 언급된 기간 중 12개월 미만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 근속 기간은 플랜 가입자의 마지막으로 완료된 근속 연도 종료일부터 은퇴일 직전 급여 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며, 플랜 가입자가 이후에 지급되는 근무 관련 연금을 받는 동안 또는 근무 관련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동안 사망하는 경우, 적격 유족, 미성년 자녀(들), 부양 자녀(들), 부양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이후의 연금에 대해 은퇴 후 근속 기간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s)(i) 최종 평균 급여. 최종 평균 급여는 플랜 가입자가 지정한 플랜 가입자로서 연속 24개월 동안 실제로 수령한 월 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이 시작되는 날의 직전 연속 24개월을 최종 평균 급여 계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의 해당 조례에 따라 플랜 가입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전체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기간의 최종 평균 급여를 결정할 때, 최종 평균 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없었더라면 플랜 가입자가 받았을 근속 수당, 특별 수당, 직무 수당 또는 위험 급여를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평균 급여 계산에는 최종 평균 급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연속 24개월 동안 실제로 수령한 근속 수당, 특별 수당, 직무 수당 및 위험 수당이 포함됩니다.



소방서에서 대위 이하의 직급으로 퇴직하거나 경찰서에서 경위 이하의 직급으로 퇴직하는 6급 플랜 가입자의 경우, 최종 평균 급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연속 24개월의 전체 또는 일부 기간에 위험 수당이 적립되지 않았다면 위험 직무에 배정된 총합에서 각 연도의 마지막 위험 직무 배정 종료 시 적립된 위험 수당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평균 급여에 추가하되, 총합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최종 평균 급여에 포함된 위험 수당의 총액은 플랜 가입자가 최종 평균 급여 계산에 사용된 전체 24개월 기간 동안 위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례 또는 양해각서에서 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초과 근무 보상이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최종 보상금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6급 플랜 가입자가 가입자로서 연속 24개월간 근속하지 못한 경우에만 최종 평균 급여는 근속을 완료한 모든 연속 기간(개월)의 월 평균으로 계산되며, 가입자가 가입자로서 총 근속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급여를 사용하여 월 등가 급여를 계산합니다.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6급 플랜 가입자가 부서 구성원으로서 현역에 복직하여 다시 6급 플랜 가입자가 되고 그 후 1년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시 퇴직하거나 은퇴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복직 이전에 본인이 입었거나 경험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이에 영향을 미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 포함하지 않으며, 이후 퇴직에 적용될 최종 평균 급여는 이전 퇴직에 적용되었던 최종 평균 급여로 정합니다. 플랜 가입자가 복직 후 필수 근속 기간 1년을 채웠지만 연속 24개월의 근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최종 평균 급여는 복직 후 완료된 모든 연속 근속 기간(개월)의 월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섹션 4. Los Angeles 시 현장 섹션 1703의 부속조항 (a) 및 (b)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섹션 1703. 시의회가 이전하는 경찰 인력이 이전의 경찰 공직 근무 경력을 보상할 수 있는 권한.

(a) **시의회**의 권한. 섹션 1709 및 1711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시의회는 이 섹션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조례를 준수하여 일반 부서에서 경찰서로 전보되어 직급 코드 2214, 2217, 2223, 2227, 2232 및 2244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취득한 경찰 인력이 Los Angeles 시 현장 및 행정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플랜에 가입한 이후로 Los Angeles 시 직원 퇴직 시스템(LACERS)에서 6급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섹션 1702(a)(r)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된 근무 경력은 모든 6급 플랜에서 근속 연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b) **근무 경력 보상에 대한 제한.** 섹션 1709 및 1711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전 근무 경력 이전을 허용하기 위해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1) **보상은 비용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가입자는 플랜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관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플랜의 보험계리사가 결정한 대로 이전되는 근무 경력의 전체 보험 계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전되는 근무 경력과 관련하여 LACERS에서 플랜으로 이체된 자금의 금액이 차감됩니다.

(2) **특정 근무 경력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이 가능한, 선서가 필요한 근무 경력은 해당 직원이 LACERS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서비스 크레딧을 획득한 직급 코드 3183, 3185, 3188 및 3198에 해당하는 과거의 Los Angeles 시 근무 경력으로 제한됩니다.

섹션 5.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1704의 부속조항 (a) 및 (b)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섹션 1704. 시의회가 공항 치안 유지 인력을 6급으로 이전하고, 이전 인력이 이전의 시 공직 근무 경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

(a) **시의회 권한.** 섹션 1709 및 1713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시의회는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조례와 헌장 및 Los Angeles 행정법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2018년 1월 7일 이전에 시 공무원으로 입사한 사람이 섹션 1702(d)에 정의된 대로 공항부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Los Angeles 직원 퇴직 시스템(LACERS)에 가입하는 대신 6급 플랜 가입자가 되고, 플랜에 가입한 후 LACERS에서 6급으로 이전의 모든 공무원 근무 경력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람은 국내 세법에서 요구하는 범위와 섹션 1714(a)(3)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LACERS 가입에 적용되는 비율로 납입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섹션 1702(q)(r)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 및 시의회가 채택한 시행령에 따라 이전된 모든 근무 경력은 모든 6급 규정에서 근속 연수로 계산됩니다.

(b) **근무 경력 보상에 대한 제한.** 섹션 1709 및 1713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전의 근무 경력을 이전할 수 있는 시의회의 권한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1) **보상은 비용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가입자는 플랜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관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플랜의 보험계리사가 결정한 대로 이전되는 근무 경력의 전체 보험 계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전되는 근무 경력과 관련하여 LACERS에서 플랜으로 이체된 자금의 금액이 차감됩니다.

(2) **이전의 모든 근무 경력은 이전해야 합니다.** LACERS에서 6급 플랜으로 이전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는 LACERS의 납부 가입자로서



획득한 이전의 시 공직 근무 경력 및 LACERS에서 보상 받은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이전의 모든 근무 경력을 LACERS에서 6급 플랜으로 이전하고, 플랜의 보험 계리사가 결정하고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조례의 요건을 준수하여 이전할 근무 경력에 대한 전체 보험 계리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선택 및 근무 경력 보상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6급에 가입하기로 한 가입자의 선택은 2018년 1월 7일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의 이전 근무 경력 보상에 대한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 또는 위원회는 2018년 1월 7일 이후 가입자의 선택 또는 보상을 취소, 철회하거나 이전을 허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섹션 6. Los Angeles 시 헌장에 섹션 1709가 새로 추가됩니다.

섹션 1709. 시의회가 경찰, 공항, 항만,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치안 유지 인력을 6급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LACERS에 가입된 동안 이전의 모든 근무 경력을 보험 계리 비용 전체를 지불하고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a) **시의회가 경찰, 공항, 항만 및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치안 유지 인력의 전근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 시의회는 이 섹션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조례와 헌장, Los Angeles 행정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2025년 1월 12일 현재 섹션 1702(b)에 정의된 경찰서, 섹션 1702(d)에 정의된 공항부, 섹션 1702(c)에 정의된 항만부 또는 섹션 1702(e)에 정의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에서 선서를 한 경찰관으로서 능동적으로 고용된 사람이 Los Angeles 시 직원 퇴직 시스템(LACERS)에 가입하는 대신 6급 플랜에 가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람은 6급 플랜 가입자가 된 후 이전의 모든 시 공직 근무 경력을 LACERS에서 6급으로 이전하고, 국내 세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섹션 1714(a)(3)에 추가로 설명된 바와 같이 LACERS 가입 자격에 적용되는 세전 납입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섹션 1702(r)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 및 시의회가 채택한 시행령에 따라 이전된 모든 근무 경력은 모든 6급 규정에서 근속 연수로 계산됩니다.

(b) **시 공직 근무 경력 이전 요건.** 인력 및 이전 시 공직 근무 경력의 이전을 허용하기 위해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1) **이전과 관련된 비용.** Los Angeles 시는 플랜의 보험 계리사가 결정한 대로 인력 및 이전의 시 공직 근무 경력을 6급 플랜으로 이전하기 위한 보험 계리 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 계리 비용에는 이전의 시 공직 근무 경력을 최초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더불어, 이번 가입 이전으로 인해 향후에 플랜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이전된 근무 경력과 관련하여, LACERS에서 플랜으로 이체된 모든 자금에서 직원 및 고용주 부담금과 섹션 1162(b)에 규정된 LACERS 직원 계좌에 적립된 이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감액됩니다.



(2) 이전의 모든 시 공직 근무 경력을 이전해야 합니다. LACERS에서 6급 플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는 LACERS의 가입자일 때 획득한 이전 근무 경력 및 해당 근무 경력을 획득할 당시 수행한 업무와 관계없이 LACERS에서 보상받은 모든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이전의 모든 시 공직 근무 경력을 LACERS에서 6등급 플랜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섹션 1703(b)(2)에 따라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 공직 근무 경력은 이 섹션의 부속조항 (b)(1)에 설명된 약관에 따라 6급 플랜으로 이전됩니다.

(3) 6급으로의 이전 선택 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가입자가 6급으로 전환하고 본인의 시 공직 근무 경력을 6급으로 전환하기로 선택하면 2026년 1월 11일 이후, 또는 조례에 규정된 다른 날짜 중 빠른 날짜 이후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 또는 위원회는 2026년 1월 11일이나 조례에 규정된 다른 날짜 중 빠른 날짜 이후로 이를 취소하거나 허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c) 채택 방식.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조례는 섹션 1618(b)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하되, 시의회는 제안된 변경의 전체 보험 계리 비용에 대해 등록된 보험계리사로부터 서면으로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섹션 7.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1710의 부속조항 (b) (2)호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2) 6급 플랜 가입자가 근무 경력에 대해 소방서, 경찰서, 항만부, 또는 공항본부서, 또는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부에 납부하는 모든 납입금 및 기부금(메달 또는 영구적인 경쟁 상을 제공하기 위해 기부한 금액은 제외)

섹션 8. Los Angeles 시 헌장에 섹션 1711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섹션 1711. 시의회가 섹션1703에 따라 6급으로 이전했던 경찰서 구성원이 납입한 금액을 환불할 수 있는 권한.

(a) 시의회가 6급 가입자에 대한 환불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 시의회는 이 섹션의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와 헌장 및 Los Angeles 행정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2025년 1월 12일에 경찰서 소속으로 활동 중인 모든 구성원 중, 이전에 섹션 1703에 따라 6급으로 이전하고 Los Angeles 행정법의 기존 조항에 따라 이전의 시 공직 근무 경력 또는 6급 건강 혜택의 일부를 보상받은 가입자에게 환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6급 가입자를 "적격 6급 가입자"라고 지칭합니다.

(b) 환불에 대한 권한 제한.

(1) 플랜에 대한 비용 중립성. Los Angeles 시는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조례를 준수하여 적격 6급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환불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 금액을 플랜에 지급해야 합니다. Los Angeles 시는 플랜이 환불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이 금액을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조례의 발효일 직후에 Los Angeles 시의 첫 번째 연간 납입금 납부와 동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출처 및 지급 방법.** 플랜은 Los Angeles 행정법의 기존 조항에 따라 시 공직 근무 경력 또는 6급 건강 혜택의 일부를 보상받기 위해 지불한 모든 금액을 일시불, 분할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적격 6급 가입자에게 환불합니다. 이 부속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지급금은 계좌 이전, 수탁자 간 이전, 세후 지급 등과 같이 국내 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격 6급 가입자가 퇴직하기 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 과세 결과는 적격 6급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3) **무이자.** 섹션 1714 또는 Los Angeles 행정법의 기존 조항과 상반되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플랜은 이 섹션에 따라 지급되는 환불 금액과 관련하여 이 섹션에 따라 지급되는 환불에서 발생하는 섹션 1714(c)에 따른 이자를 제외하고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LACERS 가입자 납입금 환불 불가.** Los Angeles 행정법의 기존 조항과 상반되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적격 6급 가입자는 시 공직 근무 경력 또는 6급 건강 혜택을 보상받기 위해 LACERS에서 플랜으로 이체한 가입자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5) **지급 계획의 해지.** 2025년 1월 12일부터 Los Angeles 행정법의 기존 조항에 따라 가입된 플랜과 적격 6급 가입자 간의 지급 플랜이 해지됩니다. 적격 6급 가입자가 Los Angeles 행정법의 기존 조항에 따라 이전의 시 공직 근무 경력을 보상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미납 잔액은 면제되며,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섹션 9. Los Angeles 시 헌장에 섹션 1713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섹션 1713. 시의회가 섹션 1704에 따라 6급 플랜으로 이전한 공항부 구성원이 납부한 비용을 환불할 수 있는 권한.

(a) **시의회가 6급 가입자에 대한 환불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 시의회는 이 섹션의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와 헌장 및 Los Angeles 행정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2025년 1월 12일에 공항부 소속으로 활동 중인 사람 중, 이전에 섹션 1704에 따라 6급으로 이전하고 Los Angeles 행정법의 기존 조항에 따라 이전의 시 공직 근무 경력 또는 6급 건강 혜택의 일부를 보상받은 가입자에게 환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6급 가입자를 "적격 6급 가입자"라고 지칭합니다.

(b) **환불에 대한 제한.**

(1) **플랜에 대한 비용 중립성.** Los Angeles 시는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조례를 준수하여 적격 6급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환불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



금액을 플랜에 지급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플랜이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조례의 발효일 직후에 플랜에 대한 Los Angeles 시의 첫 번째 연간 부담금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출처 및 지급 방법.** 섹션 1704(b)(3)과 상반되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플랜은 Los Angeles 행정법의 기존 조항에 따라 시 공직 근무 경력 또는 6급 건강 혜택의 일부를 보상받기 위해 지불한 모든 금액을 일시불, 분할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적격 6급 가입자에게 환불합니다. 이 부속조항에 따라 지급된 모든 지급금은 계좌 이전, 수탁자 간 이전, 세후 지급 등과 같이 국내 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격 6급 가입자가 퇴직하기 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모든 개인 과세 결과는 적격 6급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3) **무이자.** 섹션 1714 또는 Los Angeles 행정법의 기존 조항과 상반되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플랜은 이 섹션에 따라 지급되는 환불 금액과 관련하여 이 섹션에 따라 지급되는 환불에서 발생하는 섹션 1714(c)에 따른 이자를 제외하고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지급 계획의 해지.** 2025년 1월 12일부터 Los Angeles 행정법의 기존 조항에 따라 가입된 플랜과 적격 6급 가입자 간의 지급 플랜이 해지됩니다. 적격 6급 가입자가 Los Angeles 행정법의 기존 조항에 따라 이전의 시 공직 근무 경력을 보상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미납 잔액은 면제되며,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섹션 10.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1714의 부속조항 (a) (3)호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3) 섹션들 1703, 1704, 또는 1709에 따른 LACERS에서 이전된 가입자의 납입금에 대한 국내 세법의 요건. 부속조항 (a)와 상반되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헌장 섹션들 1703, 1704 또는 1709 및 그에 따라 채택된 조례들을 준수하여 플랜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전에 LACERS에 가입하여 획득한 근무 경력을 보상받기로 선택한 가입자는 국내 세법에서 요구하는 범위까지 LACERS 가입에 적용되는 비율로 계속하여 가입자 납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i) 이 부속조항 (a)에 따라 해당 가입자의 추가 가입자 납부금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추가적 가입자 납입금은 국내 세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세후 기준으로 가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ii) 또한, 이 부속조항 (a)에 따라 가입자의 LACERS 가입에 적용되는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가입자 납입금이 필요한 경우, 시의회는 이 부속조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조례와 헌장 및 Los Angeles 행정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보험계리사가 결정하고, 국내 세법의 모든 제한에 따라 해당 가입자가 퇴직할 시점의 추가 납부 금액을 반영하여 더 많은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섹션 11. Los Angeles 시 헌장 섹션 1714의 부속조항 (g)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g) **완전한 가입자 납입금 보장.** 위원회는 소방 및 경찰 연금 플랜 6급이 모든 크레딧 근무 기간에 대해 가입자 기여금을 받도록 보장보험하는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단, 위원회는 군 복무 및 6급 플랜 가입자가 장애 연금 또는 직무상 상해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 대한 납입금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6급 플랜 가입자는 해당 기간의 근속 연수에 대한 크레딧을 획득하기 위해 일반 법률에 규정된 요율로 보상받는 직무상 상해 기간에 대해 납입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입금은 이 조항에 규정된 납부율에 따르며, 플랜 가입자가 직무 중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섹션 12. 이 헌장 개정안의 어떤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이 관할 법원이나 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나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이 조의 나머지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이 조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는 위헌이거나 무효로 판정된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이 없었다면 이 헌장 개정안의 모든 절,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을 통과시켰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유권자의 권리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1. 유권자가 등록 유권자인 경우 투표할 권리.**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 ★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 ★ 18세 이상
 - ★ 현재 거주지에서 등록
 - ★ 중죄 유죄선고로 현재 연방 또는 주 교도소 복역 중이 아닌 경우 및
 - ★ 현재 법원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정신적 무능력자라는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
- 2. 등록 유권자인 경우 명부에 이름이 없더라도 투표할 권리.**
유권자는 잠정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합니다. 선거관리 담당관이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유권자의 투표는 집계됩니다.
- 3. 투표소가 폐장되었을 때 여전히 줄을 서있는 경우 투표할 권리.**
- 4. 비밀투표를 할 권리.** 어떤 사람도 유권자를 귀찮게 하거나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 5. 이미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유권자가 실수를 했을 때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
투표소에서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새 투표용지를 달라고 요청하거나, 선거관리 사무소 또는 투표소에서 우편투표용지를 교환하거나, 잠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 6. 투표할 때 도움을 받을 권리,** 유권자가 선택하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는 제외.
- 7. 작성한 우편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직접 투입할 권리,** 캘리포니아 주에서.
- 8.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 해당 선거구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은 경우.
- 9. 선거 절차에 대해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질문할 권리,** 선거 과정을 감시할 권리 포함.
유권자가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유권자를 적합한 사람에게 보내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방해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0.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인 선거 활동을 신고할 권리,** 선거관리 담당관 또는 총무처장관실로 신고.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의 비밀 무료 유권자 핫라인 (800) 345-VOTE (8683)로 전화하십시오.

☎ 웹사이트: www.sos.ca.gov

☎ 전화번호: (800) 345-VOTE (8683)

☎ 이메일 주소: elections@sos.ca.gov



투표자 접근가능성 정보



편의 시설 및 기타 보조 장치

(800) 815-2666, 옵션 4(LA 카운티 핫라인)

LA 카운티 투표소는 휠체어 이용 및/또는 거리 투표를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는 투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오디오 녹음 (213) 978-0444

모든 투표소에서 오디오 장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포함된 법안의 오디오 녹음은 영어, 아르메니아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녹음은 저희 웹사이트 clerk.lacity.gov/elections/multilingual-services 와 다음 위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Braille Institute Library
741 North Vermont Avenue
Los Angeles, CA 90029
(323) 660-3880

Central Library
630 West 5th Street
Los Angeles, CA 90071
(213) 228-7000

유권자는 시 사무국-선거관리부로 음성 녹음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Office of the City Clerk-Election Division
Attn: Audio Recordings
555 Ramirez Street, Space 300
Los Angeles, CA 90012



청각장애인(TTD) 전화번호 (562) 462-2259

청각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TTD 전화번호가 제공됩니다.



언어 지원 (213) 978-0444

시는 또한 투표 자료를 아르메니아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십시오

주민 의회는 Los Angeles 시 정부의 주민 참여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한 지역 문제에 관해 시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 가장 강력한 로비스트처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 지역사회 개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도로 및 보도 수리, 범죄 퇴치, 교통 관리 등의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합니다.
- 주민 의회가 연간 운영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LA의 99개 주민 의회는 거주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자산이나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지역사회 내에 기반을 둔 봉사 단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www.99NCs.com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 의회를 찾고 다가오는 2025 주민 의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EmpowerLA@LAcity.org로
이메일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213) 978-1551 (오전 9시 - 오후 5시 / 월 - 금)

Department of Neighborhood Empowerment
200 North Spring Street, Room 2005, Los Angeles, CA 90012
www.EmpowerLA.org



주요 일정

10

10월

20
24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4년 10월 7일

- Los Angeles 카운티 등록-접수 처/카운티 사무국이 늦어도 이 날짜까지 우편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우편투표 투표함의 운영이 시작됩니다.

2024년 10월 21일

투표 등록 마감일(조건부 투표의 경우 당일 유권자 등록가능)

11

11월

20
24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4년 11월 5일

선거일

투표 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투표 방법



우편투표

- 우편으로 반송
 -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7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투표지 투입
 - 투표지 투표함 위치
 - LA 카운티 투표소

우편투표 봉투 뒷면에 서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투표소

- 직접 투표합니다
- 우편투표지를 투입하세요



여기를 스캔하십시오!

**투표소를 찾으려면 스캔하십시오
운영 시간 및 위치**

아니면 locator.lavote.gov/locations/vc를
방문하십시오

**사전 투표하세요!
투표소는
2024년 10월 26일부터 개장합니다.**



유권자 메모장

[illegible]

선거일은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유권자 메모장

[illegible]

선거일은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유권자 메모장

[illegible]

선거일은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유권자 메모장

[illegible]

선거일은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OFFICE OF THE CITY CLERK
ELECTION DIVISION
555 RAMIREZ STREET
SPACE 300
LOS ANGELES, CA 90012

NON PROFIT ORG.
U.S. POSTAGE
PAID
CITY OF LOS ANGELES
ELECTION DIVISION

